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인쇄/1999년 12월 26일

발행/1999년 12월 29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인권센터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 900-4300 (직통)901-2528 팩시밀리 901-2542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연구총서 99-01

•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 성 호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만 9천명으로 추산되는 한국동란시 실종자 및 국군포로들은 동족상잔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온 몸에 안은 채 지금도 북한 땅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한국동란 중 북한에 포로가 되어 억류된 자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이들의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의 송환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군포로들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현황과 인권실태, 법적 지위에 관해 살펴 보고, 이어 북한의 국군포로에 대한 대우를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적 관점에서 검토한 다음 국군포로의 송환방안을 강구·제시하기로 한다.

1. 북한억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가.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한국동란을 전후하여 교전쌍방이 관리하고 있던 포로는 정전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처리되었다. ① 상병포로의 처리, ② 반공포로의 처리(석방), ③ 송환희망 포로의 처리, ④ 송

환거부 포로의 처리가 그것이다. 한국동란에서 이루어진 포로의 처리는 많은 다른 전쟁의 전후처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협상과정에서의 특징으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공산군측은 처음부터 포로의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 그리고 포로의 수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제3자의 접근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둘째, 정전협상에서 포로송환문제는 협상의 지속 자체를 좌우할 만큼 다른 어떤 쟁점보다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셋째, 협상당사자간의 견해차가 너무 컸고 이들의 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포로송환문제를 타개하는데 거의 2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넷째, 포로교환이 3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내용도 매회마다 이질적인 것이었다. 다섯째, 공산권 포로중에서는 대대적인 송환거부포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포로의 처리결과도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정전을 전후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포로처리과정에서 귀환을 선택한 공산군 포로는 전체 포로의 65%(89,791명)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35% (48,507명) 공산군 포로는 귀환을 거부하고 자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 포로의 경우에는 휴전회담이 종결될 때까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다수의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공산측의 이념투쟁에 기초한 입장과 전쟁수행 및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상당수 국군포로들의 존재를 은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다수의 미귀환 국군포로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1986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전쟁 요약」에 따르면 실종되었거나 포로로 추정되는 국군은 82,318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전사연구가들은 이 8만2천명의 실종 내지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중에서 전사(戰死)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략 50,000여명의 국군이 정전 성립 후에도 북한에 계속 억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산군측이 1950년 6월부터 1951년 3월까지 포획한 포로의 숫자로 발표한 국군 및 유엔군 포로 65,000명에서 실제 송환 또는 제3국에 인계(이송)된 13,469명을 제하면 억류된 포로는 51,0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행방불명자 신고와 병적부 확인을 거쳐 최종 집계한 19,409명의 '6·25참전 행불자(실종자) 명부'를 1997년 10월에 공개하였다. 이 실종인원 가운데는 미귀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에도 행방불명자 신고를 받아 군적과 대조한 뒤 정리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누락될 수밖에 없고, 군적에 있는 인원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학도의용군이나 유격대요원 등은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여러 자료를 참조할 때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국군포로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당국이 확보해 놓은 명단도 유가족 등의 사망신고가 없어 일단 실종된 것으로 본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간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한국에서

전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일부 군인들이 포로로 억류되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의 수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기에 본 연구자로서는 실사작업을 통해 확인된 국방부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요컨대 국군포로의 잔존문제와 그 정확한 숫자는 추정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생존확인 국군포로는 244명이다. 이는 탈북 귀순자와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 숫자이며,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다. 국군포로들의 인권실태

귀순자들과 사지(死地)에서 생환해 온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란기간 중 체포된 많은 국군들은 제네바 제3협약 및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되어야 할 포로였으나,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국군포로들 중 상당수는 한국동란 중에는 강압에 의해 북한군에 재징집 당하여 전장에 투입되거나 긴급복구에 동원되었다. 즉 국군포로들은 척후병 등으로 최전선에 배치되어 방패막이로 활용되거나 인민군 후방사령부로 불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후방총국」에서 관리를 맡아 예컨대 파괴된 철도 등의 시설복구, 비행장 건설, 불발폭탄 제거 등의 사역(강제노역)을 함으로써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국군포로들은 정전(停戰)이 성립된 1953년 7월 이후에도 계속 인민군 예하부대에 편성되어 전후복구사업의 명목 하에 계속 강

제노역을 강요받았다. 특히 1953년 10월경부터 1956년까지는 이른바 인민군 예하부대 소속 '해방전사' 신분으로 각지의 탄광·광산 등지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내각명령 00호에 의거, 전원 제대(석방)하여 북한공민으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국군포로들은 북한의 계급구조 하에서 적대계층 내지 복잡군중으로 분류되어 일반 공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온갖 차별과 수모를 받았다. 국군포로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의 재정비 과정에서는 거의 모두 광산, 교화소나 수용소, 혹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게 되었다.

현재 국군포로 출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광산이나 통제대상 구역 공장·집단농장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최하층의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보위부에 등록되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북한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주민의 지위를 갖게 되고 포로가 된 경험이 있는 인민군 출신 여성, 탄광노동자, 월남자 가족 등과 결혼하여 자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들까지도 성분 불량자 가운데 가장 하급으로 분류되어 군입대, 입당, 대학진학이나 사회적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국군포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소위 '남반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고, 심지어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군포로들은 최하위 신분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북한전역에 엄습한 식량난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다. 그들이 집단거주하는 광산지역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식량 보급이 여의치 않아 사소한 병에 걸려도 쉽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2. 북한의 국군포로에 대한 대우의 인도법적 평가

가. 포로역류국으로서의 기본적 의무 위반

북한은 한국동란 시 포로역류국으로서 포로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첫째, 북한은 강압에 의해 다수의 국군포로들을 북한군에 재징집하여 이들을 전장에 투입시키거나 긴급복구 등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특히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이나 폭격으로 파괴된 비행장을 복구하는데 국군포로를 강제로 동원한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매일 수많은 포로들이 목숨을 잃도록 방치한 행위는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하면 포로를 위생상·보건상의 모든 보호를 주는 건물에 억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국군포로들을 포로수용소에 수용·보호하지 않고 교화소(敎化所)에 보내어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포로로 대우했어야 할 조창호 소위에 대하여 13년간 부당하게 교화노동형의 형벌을 부과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국군포로들을 제네바 제3협약이 정한 조건을 갖춘 포로수용소에 수용해야 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은 조창호 소위를 비롯하여 박광혁 대령, 박승일 대령, 고근홍 대령, 김영로 대령 등과 같은 자가 그의 권한내에 들어 오면 먼저 이들의 신분에 관하여 신문(訊問)을 한

후 그들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포로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해 회유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을 뿐, 포로들에 대한 신분증명서 발급과 같은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

이기봉과 조창호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국군포로를 회유하여 자기들의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또는 북한지역 출신라는 이유만으로 고문이나 학대 등 비인간적인 수단도 불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 제17조 위반이다.

장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하사관은 감독의 일 이외의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이나 목적을 가진 노동을 부과할 수 없다. 참호를 파거나 포탄을 운반하는 것은 군사적 성질이나 목적을 가진 노동이므로 이를 시킬 수 없다. 그리고 노역을 하는 포로의 경우에는 억류당국에 의하여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다.

그러나 북한은 이상의 그 어느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준수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은 조창호를 '월남을 기도한 반동분자'로 몰아 그의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무참히 유린하는 것은 물론, 장교에게 금지되어 있는 강제노동을 부과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강제노동의 내용은 군수공장에서 포탄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이것은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군사적 성질과 군사적 목적의 노동이었는데,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협약의 이종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포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편지나 엽서를 보내고 받을 것이 허가되어야 하는데도, 북한은 전쟁중은 물론 조창호의 귀환 직전까지도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다. 송환의무 위반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하면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 및 송환은 「지체없이」(without delay)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라 함은 포로의 석방 및 송환행위의 실시에 필요한 시일 이상 지연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적대행위가 종료, 즉 1953년 7월 남북한간에 정전이 실시된 직후 국군포로를 즉각 유엔군측에 인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조창호를 비롯한 수많은 국군포로들을 전쟁포로 송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북한지역내의 여러 교도소로 분산·수감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체포된 국군들을 포로가 아닌 죄수로 취급했으며, 포로송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정전 후에 국군포로들을 광산과 공장 등에 배치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제네바 제3협약에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다수의 국군포로들이 송환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송환을 거부(또는 북한에 대해 비호를 청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북한은 제네바 제3협약과 정전협정에 위반하여 국군포로의 지체없는

석방 및 송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평가라고 하겠다.

3. 북한억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 해결방안

가. 기본방향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국제적십자사나 유엔 등 꾸준히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둘째, 국군포로문제는 본질상 전후 미해결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군포로문제를 포로에 관한 국제법규나 전쟁법에 따른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북화해와 인도주의 즉,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셋째,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남북협상을 제의하여 북한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남북협상을 통한 해결은 장·차관급의 남북한 당국간의 협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다양한 협상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만일 남북협상에서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을 이산가족의 한 부류로 취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재북(在北) 국군포로 2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대책 등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나. 세부추진방안

(1) 국군포로의 송환 등 해결방안

(가)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

본질상 국군포로문제는 한국동란이 낳은 전후 미해결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正道(正道)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사정전위원회의 틀 내에서 또는 유엔사-북한군간의 장군급 대화채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북한이 19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이래 동 기구를 무실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또 현재 장성급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여기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다루는 데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남북간의 직접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만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남북협상을 통한 해결은 당국간 대화를 통한 해결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해결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방안이든 남북한관계 현실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1998년 4월과 1999년 6~7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의 예를 고려할 때 우선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적십자회담에 그 구체적인 이행·실천을 위임하는 구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ICRC의 주선 또는 중개 활용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직접 대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제3자의 주선이나 중개가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북한간에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나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즉 ICRC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을 하거나 귀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ICRC가 남북한의 적십자사와 함께 공동조사 또는 귀환의사 확인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다) 포괄적인 이산가족문제의 하나로 접근, 단계적인 해결 모색

국군포로문제는 ‘포괄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이라는 클 틀 속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것이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더욱 맞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산의 원인과 현재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군포로들이나 남북 억류자나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들도 역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섭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군포로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완전한 해결책(송환 내지 가족과의 재결합 등)을 강구하는 단계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속적인 상호주의’ 또는 ‘유연한 병행추진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협상에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먼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에 주력하고, 이어 국군포로와 재남가족과의 서신교환,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의 상봉, 국군포로 송환 또는 가족이주를 통한 재결합을 남북한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양측이 상호주의에 입각, 공정한 입장에서 대화를 개시해야 하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군포로 등의 인권 개선 및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 국군포로 및 가족의 인권 개선

정부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이 문제를 북한인권문제의 하나로 취급하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인권 개선방안으로는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보편적인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국군포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적십자위원회나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비정부간 국제인권단체에 제기하여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국군포로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북한에서 대를 이어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재북 국군포로 2세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국군포로 2세로 특정한 인도적 차원의 대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제3국 체류 탈북 국군포로 및 가족의 보호 및 지원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중에는 국군포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마땅한 일거리와 안정된 수입원도 없이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 은거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할 수 없이 입에 겨우 풀칠을 할 정도로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금품의 갈취 외에도 신체적인 폭행과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하는 종교단체 등 NGO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신분보장과 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남한지역내 유해발굴작업 추진

지금까지 정부는 정전 후 대대적으로 유해를 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였으나, 일부 전적지에

서 유해가 간혹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도 미발굴된 유해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먼저 관련 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자료를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북한이 지금도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단시일내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선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국제 NGO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관련 당사자인 미·중의 협조하에 대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은 정지작업을 마친 후에 국군포로 송환협상을 북한측에 제의해야 한다. 국군포로들도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인도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군사정전위원회나 장군급대화 채널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남북한 당국의 양해하에 남북적십자사 대표가 만나 해결을 논의(1953년 포로송환업무 참여경험 참조)할 수도 있고,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국군포로가 전사자로 처리되어 국립묘지에 위패가 안치돼 있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

다. 이를 위해 남북협상에서는 먼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에 주력하고, 서신교환, 상봉 및 재결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선과 협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능하면 국군포로와 미전향장기수의 맞교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국군포로의 송환이 어렵다면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미귀환 국군포로와 재남가족들이 상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내 국군포로와 그 2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내부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내부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군포로들이 탈출·귀환해 올 것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계기반 마련 및 자립지원을 위한 보다 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I. 서 론	1
II.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4
1.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4
가.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4
나.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7
2.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15
가.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15
나.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 추정치	17
다.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숫자	21
3. 국군포로들의 취급과 인권실태	22
가. 국군포로들에 대한 대우 개관	22
나. 국군포로 조창호·양순용·장무환의 북한내 생활 ...	28
다. 기타 국군포로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관한 기타 증언 ...	31
III. 제네바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	35
1. 제네바 제3협약의 남북한에 대한 拘束力	35
2.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에 대한 國際人道法的 評價 ...	39
가. 포로억류에 따른 기본적 의무 위반	39
나.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	41
다. 송환의무 위반	44
IV. 남한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장애요인	47

1.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인식	47
가. 남한의 기본인식	47
나. 북한의 기본인식	50
2.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	51
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추가송환 요구	51
나. 범정부차원의 기구 구성 및 국군포로 송환대책 마련	53
다.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귀한 국 군포로 지원	55
라.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송환 촉구 여론 조성	58
3.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	60
가. 북한의 국군포로 존재 부인 및 협의거부 태도	60
나. 반공포로 석방 요구 등 역선전 가능성	61
다.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	63
V.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 및 송환문제 해결방안	66
1. 기본방향	66
2. 세부추진방안	68
가. 사전 기반조성	68
나. 국군포로 및 가족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71
다. 국군포로의 가족재회 및 송환 추진	81
라. 국군포로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 국군유해 발굴 및 송환	89
VI. 결 론	92
참고문헌	95

도표목차

<표 1> 상병포로 송환내역	9
<표 2>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의 상호교환	11
<표 3> 상호합의에 따른 처리포로 및 실제송환 포로의 통계 ...	16
<표 4> 6.25 당시 억류·실종된 한국군수(1953.8.7 유엔사 발표) ..	19

I. 서 론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을 일방 서명자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타방 서명자로 한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한국동란의 포성은 일제히 멈추었다.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남북한의 대치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남긴 후유증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 또한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의 문제는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9,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동란시 행방불명자(실종자)와 국군포로들은 동족상잔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온 몸에 안은 채 지금도 북한 땅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 생사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북한에 억류되어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망각의 전사(戰士)가 되어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느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생존자들은 대부분 70대의 고령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등 최하층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¹⁾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한국동란 중 북한에 포로가 되어 억류된 자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이들의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이 같은 무관심 내지 방치 태도는 미국이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보이고 있는 깊은 관심과 대비되면서 국내외, 특히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²⁾ 그러나 1951

1) 「조선일보」, 1997년 6월 25일, p. 14.

2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년 포로가 되어 북한에 강제억류된지 43년만인 1994년 10월에 귀환한 조창호 소위에 의해 국군포로들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군포로문제가 다시금 국내외의 관심사 및 남북관계의 현안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의 송환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군포로들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미귀환 국군포로들의 현황과 인권실태, 제네바 제3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의 국군포로대우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이어 국군포로문제의 특성, 남북한의 해결노력과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국군포로들의 인권문제 해결방안과 송환대책을 강구·제시하기로 한다. 이 같은 연구는

-
- 2) 세계국가로서 국제질서와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해외에 참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은 자신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해 특별한 애착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쟁 종결과정에서 전쟁포로(prisoner of war: POW)의 송환은 물론 전쟁실종자(missing in action: MIA)의 완전한 해명을 위해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의 유해와 유품도 가급적 모두 발굴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매년 9월 16일을 「전쟁포로 및 실종자 국가추념일」(National POW/MIA Recognition Day)로 지정하고 있다. 徐柱錫, “美國의 對北韓 捕虜 送還 政策,”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과 戰爭捕虜 送還問題」, '97 軍事史 學術會議 발표자료 (1997.6.10), pp. 29~30.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미국 정부의 관련 조직으로는 1991년 미 국방부에 전쟁포로 및 실종자문제를 전담하는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POW/MIA) 직책이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사무소」(DPMO)가 있다. 유해 확인을 위해 1992년 1월에는 미 태평양사령관(USCINCPAC)의 산하조직으로 가능한 완전한 해명을 위해 전문가들을 결집한 「완전해명 합동실무단」(Joint Task Force-full Accounting: JFT-FA)이 창설되었는데, 이들에 의해 수집된 유품은 하와이에 있는 중앙식별실험소(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Hawaii: CILHD)에 보내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위의 논문, p. 42.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남북협상이 열릴 경우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Ⅱ.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1.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가.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한국동란시 발생한 포로들의 송환문제는 1951년 7월 10일 개막된 휴전회담 제1차 회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회담에서 유엔군(또는 유엔군사령부)측은 의제로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문제」와 「전쟁포로에 관한 협의사항」 등 9개 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ICRC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공산군측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변변한 포로수용소조차 마련하지 않은 데다가 국군 및 유엔군포로들의 대우가 극히 열악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외부세계에 폭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군측도 유엔군측에 억류된 포로들의 송환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마냥 의제에 관한 합의를 미룰 수는 없었다. 계속된 협상의 결과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1951년 7월 26일 제10차 회담에서 「포로에 관한 협의」 등 5개 항의 의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1951년 11월 27일 제28차 회담에서 쌍방은 포로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11일 포로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포로교환 합동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최초로 유엔군측은 전체 포로의 1:1 교환을 원칙으로 정하고, 전체 포로의 명단 교환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산

군측은 “쌍방이 억류하고 있는 모든 포로를 정전협정 조인 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뒤 포로의 명단과 자료를 교환하는 데 합의한 쌍방은 1951년 12월 18일 각측이 억류중인 포로의 명단을 교환하였다. 이 때 공산군측이 제시한 명단은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파악하고 있던 실종 인원 수 99,500명(한국군 88,000명, 유엔군 11,500명)보다 훨씬 적은 11,559명(한국군 7,142명, 유엔군 4,417명)이었다. 반면에 유엔군측이 제시한 공산군 포로의 수는 총 132,474명(북한군 95,531명, 중공군 20,700명, 남한출신 16,243명)이었다.³⁾

이렇게 공산군측이 포로 숫자를 축소하여 제시하자 유엔군측은 12월 23일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확한 포로의 수를 제시할 것을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국군포로 57,800여명에 대해 교양을 실시하여 현지에서 석방하였다고 공색한 변명을 하였다.⁴⁾ 그러나 이는 그들이 마지못해 국군포로를 북한의 후방 군사조직에 편입시킨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과 다름 아니었다.⁵⁾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952년 1월 28일 유엔군측은 공산군 포로의 숫자를 그 동안 민간인 수용소로 옮겨진 민간인 394명을 제외한 132,080명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1952년 1월 이후부터 유엔군측은 포로의 희망에 따라 송환 여부를 결정하자는 ‘자원송환’(自願送還) 내지 자유송환을 포로송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공산군측이 국군포로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

3)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서울: 국방부, 1999), pp. 7~8.

4) 이 날 공산측 대표 李相朝의 발언 참조. 이에 관해서는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編, 陸軍本部 軍史研究室 譯, 「韓國戰爭」, 제10권 (서울: 명성출판사, 1986), pp. 206~212 참조.

5) 김복동,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즈음해」, 정책자료집 98-1 (1998.12), p. 21.

선 식방을 택하거나 북한군에 자원입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유선택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2월 3일 '강제송환'(強制送還), 즉 '전체 대 전체송환'을 포로송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쌍방은 포로송환의 원칙과 포로명단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함으로써 포로교환문제는 휴전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1952년 6월 말까지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측 포로에 대한 면담과정을 통해 송환을 희망하는 공산군측 포로인원을 83,071명으로 파악하였다. 1953년 6월 8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등을 포함한 「포로송환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 ① 본국으로 복귀를 원하는 모든 전쟁포로는 60일 이내 송환
- ② 송환에 영향을 미치거나 송환을 막기 위해 힘에 의한 위협의 사용을 금지
- ③ 60일 이후 나머지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
- ④ 그 후 90일 동안 포로 소속국가의 파견대표가 본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 실시
- ⑤ 설명은 중립국송환위원회 대표와 억류측 대표의 면전에서 실시
- ⑥ 90일 기한이 마감되면 송환거부 포로는 정치회담으로 인도되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림.
- ⑦ 그 기간 이후에도 남은 송환거부 포로는 민간인 신분으로 규정
- ⑧ 만일 그들이 중립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후원

6) 포로송환협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休戰史」(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pp. 271~273 참조.

양측은 1953년 7월 22일 최종적인 포로 숫자를 상호 통보하였다. 이 때 유엔군측은 74,000명(북한군 69,000명, 중공군 5,000명)을, 공산군측은 12,764명(한국군 8,186명, 유엔군 4,578명)을 각각 통보하였다. 7월 25일 쌍방은 각각 비무장지대의 남북쪽에 포로접수 장소를 지정하고, 필요한 수용시설을 설치하는 수정안에 합의하였다.

나.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한국동란을 전후하여 교전쌍방이 관리하고 있던 포로는 정전(停戰)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처리되었다.⁷⁾ ① 상병포로(傷病捕虜)의 처리, ② 반공포로의 처리(석방), ③ 송환희망 포로의 처리, ④ 송환거부 포로의 처리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상병포로의 처리

한국동란 기간중 발생한 포로의 처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동란의 막바지에 달한 1953년 4월 20일~26일간에 실시된 상병포로의 교환(이른바 little switch)이었다.⁸⁾ 1952년 12월 13일 ICRC는 「포

7) 한국동란시 발생한 포로의 송환문제 및 그 처리에 관해서는 金幸福, 「韓國戰爭의 捕虜」(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p. 180~255; 朴鎭龜, “休戰協定の 締結過程,” 「軍史」 제6호(1983), pp. 80~88 참조. 한국동란의 정지가 휴전인지 아니면 정전인지에 관해서는 상세한 법적 논의를 요하는 사안이다. 이에 관해서는 제성호, “한국휴전협정의 이행실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서울: 집문당, 1998), pp. 197~198 참조.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고, 대부분 정전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휴전회담이라는 표현의 경우 정전회담이라는 표현보다 우리에게 널리 익숙해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휴전회담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 350.

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The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이하 제네바 제3협약이라 함)⁹⁾에 따라 상병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2일 판문점의 연락장교단을 통해 상병포로의 즉각송환을 제의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¹⁰⁾ 공산군측이 3월 28일 이 제의에 동의해 옴에 따라 양측은 1953년 4월 6일부터 상병포로 교환문제의 토의를 시작하여 4월 11일 「상병포로교환협정」을 체결(조인)하였다.¹¹⁾

이 협정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상병포로의 교환이 실시되었다.¹²⁾ 상호 교환된 상병포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으로 인계한 인원이 6,670명,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으로부터 인수한 인원은 684명(한국군 471명, 유엔군 213명)이었다. 이 같은 상병포로의 교환은 “충돌당사국은 중상 및 중병의 포로를 그 수와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

9) 전쟁포로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규는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1907년 10월 18일자 헤이그협약」의 부속규칙(일명 헤이그규칙)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규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제네바 제3협약으로 불리우고 있다. 제네바 제3협약은 1949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관회의에서 체결되어 1950년 8월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총 1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77년에 체결된 제1 추가의정서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보완되었다. 제네바 제3협약은 포로의 자격요건, 포로의 대우, 포로신분의 종료, 상병자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 (U) Msg, CINCUNC CX 61281 to DA 19 Feb 53, DA IN 239084. *Dept. of State Bulletin*, 6 Apr. 53, p. 494;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66), p. 4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休戰史」(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p. 255 참조.

11) 金宰福, 「韓國戰爭의 捕虜」, pp. 185~186 참조.

12) 남북회담사무국, 「판문점 수첩(증보판)」(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5), p. 63.

때까지 치료한 후에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제 3협약의 제109조에 합치하는 조치였다고 하겠다.

<표 1> 상병포로 송환내역

유엔군측	인 원(명)	공산군측	인 원(명)
인민군	5,194	한국군	471
중국군	1,030	미 군	149
민간인 억류자	446	영국군	32
		기타	32
계	6,670	계	684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休戰史』, p. 262.

(2) 반공포로의 석방

두번째로 포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정전이 임박했던 1953년 6월 18일에 한국정부 단독으로 단행한 「반공포로의 석방」이었다. 이는 당시 한국정부가 유엔군 관할하에 있던 공산군 포로중 북한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자유인으로 석방한 것을 말한다.¹³⁾ 반공포로의 석방 경위는 다음과 같다.

휴전회담이 마무리단계에 있던 1953년 4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은 의신과의 서면회견에서 “휴전회담을 반대하며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도 4월 21일 ‘정전 반대 및 북진통일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대통령은 5월 12일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정전반대 입장의 불변과 송환거부 포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p. 350.

로의 석방'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단호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5월 25일 송환불원(送還不願) 포로의 석방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여 6월 6일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에게 반공포로 석방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6월 18일부터 이틀간 부산, 대구, 광주, 논산, 마산, 영천, 부평 등의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석방된 반공포로의 숫자는 수용된 전체 반공포로의 80%를 상회하는 27,388명에 달하였다.¹⁴⁾

그런데 이 당시는 포로수용소가 미군의 병참관구사령부의 관할하에 있었고, 정전협정의 모든 조문에 대해 이미 유엔군측과 공산군측 사이에 가조인이 이루어져 정식조인과 그에 대한 절차문제만 남은 때였다. 따라서 한국정부 단독으로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조치는 유엔군(특히 미군)과의 충돌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상이었다. 실제로 유엔군사령부는 이 같은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공산군측도 격렬한 비난과 함께 정전협정의 준수에 대한 보장을 유엔군측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산군측은 이를 빌미로 정전협상의 타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측은 한국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나 중립국송환위원회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정전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의 억지주장과 유엔군측의 미온적 주장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우리 정부의 송환거부 포로의 석방요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¹⁵⁾

14) 남북회담사무국, 「판문점 수첩(중보판)」, p. 63;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11 참조.

15) 위의 책, pp. 11~12.

(3) 송환희망 포로의 교환

세번째로 포로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정전이 성립된 후 1953년 8월~9월간에 실시된 송환희망 포로의 상호교환(이른바 big switch)이었다. 이 같은 조치는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군사정전협정과 같은 날 이 협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¹⁶⁾라는 명칭의 포로협정에 따른 것이다.¹⁷⁾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정전협정 체결 다음 날인 7월 28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최초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포로송환을 8월 5일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8월 1일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감시조의 편성 및 포로의 확인, 안전보장, 교통 등의 문제를 토의하였고, 8월 4일부터 쌍방의 적십자대표들이 상대방의 포로수용소를 시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유엔군사령부는 75,823명(북한군 70,183명, 중공군 5,640명)의 공산군 포로를, 공산군측은 12,773명(한국군 7,862명, 유엔군 4,911명)의 포로를 상호 송환하였다.¹⁸⁾

<표 2>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의 상호교환

구분	한국군 및 유엔군				공산군		
	한국	미군	기타	계	북한	중공	계
인원수	7,862	3,597	1,314	12,773	70,183	5,640	75,823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p. 354.

16) 이 협정은 정전협정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p. 350.

18)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12.

(4) 送還拒否 포로의 처리

마지막으로 포로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1953년 11월~1954년 2월간에 이루어진 송환거부 포로의 처리였다. 이것은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희망 포로의 전원이 귀환할 때 자기의 본국(소속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남아 있던 (송환거부) 포로들을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 당시 유엔군측에 억류된 송환거부 포로는 인민군 7,900명, 중공군 14,704명으로 총 22,604명인데 비해, 공산군측에 억류된 송환거부 포로는 한국군 335명, 미군 23명, 영국군 1명으로 총 359명에 불과하였다.¹⁹⁾ 이들은 1953년 6월 8일의 「포로송환협정」과 7월 27일의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²⁰⁾에 따라 송환·처리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엔군측의 스위스, 스웨덴과 공산군측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양측의 송환거부 포로들은 120일 동안 비무장지대 내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보호 및 관리 하에 본국 대표들에 의해 송환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받았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 10일부터 22,604명의 송환거부 포로들을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인도관리군'에게 인계하였고, 공산군측은 9월 24일 359명을 인계하였다. 10월 15일부터 포로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첫날의 설득 결과 중공군 출신 포로 500명 중 단지 7명만이 중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 10월 16일부터 북한군 출신 포로들에 대한 설득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pp. 350~351, 356 참조.

20)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의 전문은 제성호, 「韓半島 非武裝地帶論」 (서울: 서울프레스, 1997), pp. 253~255 참조.

들이 설득을 완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10월 31일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국군 및 유엔군 출신포로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12월 2일부터 개시되었다. 그러나 19,414명의 공산군 출신 포로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하지도 못한 채 12월 23일 90일간의 설득시한이 마감되었다.

1954년 1월 20일 인도관리군은 120일간의 포로의 보호와 관리를 마치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쌍방에 인계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21,839명(북한군 7,604명, 중공군 14,235명)의 포로를 정식으로 인수하였고, 공산군측은 347명의 포로를 인수하였다. 한편 북한·중공 또는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공산군 출신 포로 124명과 국군출신 2명은 2월 9일 인도관리군을 따라 인도행 수송선을 탔다.²¹⁾

(5) 종합평가: 한국동란시 포로처리의 특징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는 다른 전쟁의 전후처리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협상과정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군측은 처음부터 포로의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 그리고 포로의 수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제3자의 접근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둘째, 정전협상에서 포로송환문제는 협상의 지속 자체를 좌우할 만큼 다른 어떤 쟁점보다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셋째, 협상당사자간의 견해차가 너무 커 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포로송환문제를 타개하는데 거의 2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넷째, 포로교환이 3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내용도 매회마다 이

21)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p. 13~14.

질적인 것이었다.

다섯째, 공산권 포로중에서는 대대적인 송환거부포로가 발생하였다.²²⁾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포로의 처리결과도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정전을 전후하여 실시된 포로처리과정에서 귀환을 선택한 공산군 포로는 전체 포로의 65%(89,791명)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35%(48,507명)의 공산군 포로는 귀환을 거부하고 자유의 길을 선택하였다.²³⁾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 포로는 휴전회담이 종결될 때까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다수의 미귀환 포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 단독으로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을 제외하면, 한국전쟁시 포로의 처리는 모두 교전쌍방간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중 상호 합의(협정)에 의해 처리된 포로 및 실세송환된 포로의 통계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pp. 356~357.

23) 위의 책, p. 357. 한국동란시 송환거부포로의 처리문제는 제네바 제3협약 제 118조 포로송환규정(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포로는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의 해석문제를 야기하였다. 공산군측은 문리해석을 고집하여 공산군포로의 무조건 즉각 송환(강제송환)을 요구한 반면, 유엔군측은 목적론적 해석을 견지하여 자유송환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후자가 우선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에 관해 제네바 제3협약 해설서는 1952년 12월 3일자 유엔총회 결의와 한국정전협정의 관련 조항 등 한국동란 당시 취해진 결정들은 분단국 내에서의 무력충돌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한 '임시방편적 조치'(makeshift solutions)로 간주되어야 하며, "송환된 후 인종, 사회적 지위,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그의 생명 또는 자유에 영향을 미칠 불공정한 조치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송환이 인간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된다고 우려할 만한 심각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규칙(제118조)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Jean S. Pictet (ed.),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Commentary III* (Geneva: ICRC, 1960), pp. 546~547 참조. 여기서 '임시방편적 조치'라는 말의 의미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첫째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선택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고(김병렬,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人道法論叢」, 제19호(1999), p. 109). 둘째는 장차 새로운 원칙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였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Karl Doehring, "Deserters,"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3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2), p. 154.

2.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가.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전술한 바와 같이 1951년 12월 18일 열린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은 이미 전쟁 중 ICRC에 보고했던 북한 인민군 111,754명과 중공군 20,720명 등 모두 132,474명의 공산군 포로 명단을 내놓았다(최종 합의처리된 공산군 포로 수는 132,097명, 실제 송환된 공산군 포로수는 113,121명). 반면에 공산군측은 국군포로 7,142명과 유엔군 포로 4,417명(미군 3,198명 포함) 등 모두 11,559명의 명단만 제출하였다(실제 송환된 유엔군과 국군포로의 수는 13,469명). 이에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은 정확한 포로 숫자를 제시하라고 공산군측에 촉구하였다. 공산군측은 포로의 숫자를 밝히기를 끝내 거부하면서 유엔군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미군포로는 체질이 약해 병사했거나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희생되었으며, 한국군 포로는 전선에서 모두 석방했다고 억지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공산군측은 정전을 전후하여 유엔군측에게 13,469명의 포로만을 송환하였고, 우리측이 이 가운데서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인계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지나지 않았다.²⁴⁾

그러나 공산군측이 제시한 국군포로의 수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공산군측이 평양방송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한 전과(戰果),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제1차 1·2단계 작전종료 종합전과에서

24)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한국동란 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포로의 숫자와 송환방식에 의해 처리된 포로의 숫자 간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당시의 혼란한 상황하에서 포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십분 감안한다 할지라도 공산군측이 인도한 국군포로의 숫자와 그 당시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가 추정했던 포로숫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개전(開戰) 후 6개월만인 1950년 12월 30일 현재 국군 65,000 여명과 미군 10,000여명을 붙잡았다고 선전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공산군측은 개전 후 1951년 3월 25일까지 9개월 동안 65,000명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를 포획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²⁵⁾ 하지만 정전을 전후하여 북한이 실제로 유엔군측에 송환한 국군포로는 그들이 체포했다고 선전한 65,000명(또는 그 이하)의 포로 중에서 13,469명의 인원(20% 미만)에 불과했다. 그 후 북한은 지금까지 나머지 포로들에 대한 처리실태를 밝히지 않고 있다.

<표 3> 상호합의에 따른 처리포로 및 실제송환 포로의 통계

구 분	국 군	유엔군	계	인민군	중공군	계
상병 포로 교환	471	213	684	5,640	1,030	6,670
포로송환(교환)	7,862	4,911	12,773	70,183	5,640	75,823
송환거부(팔호 내:추후복귀자 (추가 송환자)	335 (10)	24 (2)	359 (12)	7,900 (296)	14,704 (469)	22,604 (765)
계: 합의처리자 (실제 송환자)	8,668 (8,343)	5,148 (5,126)	13,816 (13,569)	110,723 (76,119)	21,374 (7,139)	132,097 (83,258)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p. 357;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15; 김행복, 「한국전쟁의 포로」, p. 254 참조.²⁶⁾

25) 김복동,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p. 21.

26)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에서는 국군포로 복귀자 수를 12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로 이송된 2명도 복귀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공산군측 복귀자에도 본국으로 귀환한 자 외에 제3국 이송자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최후까지 본국송환을 거부한 자만을 통계 수치에서 제외).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와 북한측이 당초 체포했다고 주장한 포로숫자간에 엄청난 간극(間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사연구가들은 북한이 총살해 버리거나 강제노역에 동원해 많은 국군포로들을 희생시킨 후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1950년 6월 28일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국군 부상병 300여명을 병원구내에서 집단으로 학살한 사실을 들고 있다. 요컨대 북한측이 제시한 국군포로의 숫자는 엄청나게 축소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²⁷⁾

나.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 추정치

그러면 정확한 국군포로의 숫자, 특히 포로송환 과정에서 제외된 미귀환 국군포로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에 관해 학자들이 제시한 추정치는 매우 다양하다. 1986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전쟁 요약」에 따르면 한국동란시 실종되었거나 공산군측에 포로로 체포·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은 82,318명이라고 한다.²⁸⁾ 많은 전사연구가들은 이 82,000명의 실종 내

27) 이에 관해 전문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 유엔군측 자료에 의하면 한국동란시 행방불명자를 한국군 88,000여명, 유엔군 1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위패 봉안관에 전사자로 봉안되어 있는 유골없는 전사자도 101,90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공산군측은 정전 때까지 국군 7,862명과 유엔군 4,853명 등 12,715명의 포로명단을 제출하는데 그쳤다. 결국 공산군측은 13,000여명을 송환한 다음 더 이상 국군포로는 없으며 국군은 모두 석방되었다고 강변하였다. 유엔군측이 송환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합계인 83,258명에 비해 엄청나게 적은 숫자이다. 한편 1993년 정부는 현충일 38주년 추념행사 보도자료에서 6·25 참전 미확인 전사장병으로 95,844명과 군무원, 경찰관, 중군청년단원 등 총 102,764명의 실종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全元策, “對北感覺에 問題있다,” 「民族正論」, 1994년 12월 호, pp. 82~84 참조.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p. 358;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國際人權報」, 1995년 1월 15일자, p. 2.

지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중에서 전사(戰死)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략 50,000여명의 국군이 정전 성립 후에도 북한에 계속 억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전협상을 종결지웠던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동란 초기 그들(공산군)이 잡은 한국군 5만의 포로를 이른바 석방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군대로 징발하여 전선에 투입시켰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들도 시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⁹⁾ 미귀환 국군포로로서 송환되지 못한 숫자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학자나 전사연구가로는 이항구, 이기봉, 서주석 씨등이 있다.

이항구씨는 한국동란 중 82,000명 내지 87,000명의 국군이 포로가 되었는데, 정전 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8만명 중에서 2~3만명은 동란 중에 사망했을 것이고, 50,000~60,000명 정도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³⁰⁾ 이기봉씨는 정전 후 55,000여명의 국군포로가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전리품으로 북한에 억류당하여 전후 복구사업이나 4대 군사노선에 따른 전국요새화 작업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³¹⁾ 국방연구원의 서주석 박사는 미송환 국군포로의 규모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고 하면서, 많게는 69,000~94,000명, 적게는 20,000명~41,000명에 달한다고 주장되지만, 대체로 50,000명을 전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³²⁾ 양순용씨의 수기

29) Mark W. Clark, 김형섭 역,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원제 *From the Danube to the Yalu*) (서울: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p. 127.

30)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북한 억류 한국군 포로들의 실태보고서,” 「새물결」, 1995년 10월호, p. 101.

31) 이기봉, “5만 국군노병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北韓」, 1998년 6월호 (통권 제318호) (1998), p. 37.

32) 서주석, “국군포로 및 남북자 송환문제 연구,” 「北韓調査研究」, 제2권 1호 (1998), p. 260.

를 대신 적은 김용삼 기자는 반공포로 석방자 27,388명과 송환거부 공산측 포로 22,604명을 합친 49,992명 정도의 국군포로를 북한이 송환하지 않고 계속 억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³⁾

한편 중공이 발간한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전사」(中國人民支援軍抗美援朝戰史)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한 이후 획득한 포로숫자를 46,523명(국군 37,815명, 유엔군 8,708명)으로 기록하고 있고,³⁴⁾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정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는 한국동란 당시의 최종적인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를 82,318명으로 집계한 바 있었다(<표 4 참조>).

<표 4> 6.25 당시 억류·실종된 한국군수(1953.8.7 유엔사 발표)

구 분	전 사	부 상	실종 및 포로	합 계
합 계	95,800	294,280	89,262	479,342
한국군	58,809	178,632	82,318	319,759
유엔군	36,991	115,638	6,944	159,583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p. 358.

전원책처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군 포로는 최소한 50,000여 명(클라크대장 주장)에서 최대 100,000만여명(1993년 정부 발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³⁵⁾ 또 어떤 사람은 공산군측이

33) 김용삼, 「국군포로 양순용씨 귀환기」, 「월간조선」, 1998년 6월호, p. 274. 한편 조창호는 귀환 후 발간한 회고록에서 정전 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수를 30,000명 내지 50,000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조창호, 「돌아온 사자(死者): 조창호의 북한생활 사십삼년」, 「지호」, 1995, p. 172.

34)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中國),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 전쟁사」 (원제 「中國人民支援軍抗美援朝戰史」) (서울: 세경사, 1991), pp. 393~394 참조.

1950년 6월부터 1951년 3월까지 포획한 포로의 숫자로 발표한 국군 및 유엔군 포로 65,000명에서 실제 송환 또는 제3국에 인계(이송)된 13,469명을 제외하면 억류된 포로는 51,0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이같은 50,000여명의 추정치가 반드시 신빙성이 있는 수치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우선 국군포로 실태에 관한 공산측 자료는 거의 없는 데다가 실증적인 근거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한국동란 기간 중 북한측이 발표한 포로숫자는 퇴각하는 시점에서 인민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그 후에도 정전협정 체결시(1953년 7월까지) 2년 7개월 이상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1·4후퇴로부터 1951년 중공군 춘계공세까지 우리측이 입은 막대한 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³⁶⁾ 더욱이 여기에는 당시 군적에는 없으면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학도의용군, 특수부대 요원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50,000명을 완전한 숫자로 산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³⁷⁾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행방불명자 신고와 병적부 확인을 거쳐 최종 집계한 19,409명의 '6·25참전 행불자(실종자) 명부'를 1997년 10월에 공개하였다. 이 실종인원 가운데는 미귀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에도 행방불명자 신고를 받아 군적과 대조한 뒤 정리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누락될 수밖에 없고, 군적에 있는 인원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학도의용군이나 유격대요원 등은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³⁸⁾

35) 全元策, “對北感覺에 問題있다,” 『民族正論』, p. 84.

36)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16.

37) 위의 책, p. 17.

이상의 여러 자료를 참조할 때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국군포로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당국이 확보해 놓은 명단도 유가족 등의 사망신고가 없어 일단 실종된 것으로 본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간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한국에서 전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일부 군인들이 포로로 억류되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의 수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계에서는 한국동란 당시의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에 대해 여전히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국방부 발표한 수치인 19,000여명을 미귀환 국군포로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요컨대 국군포로의 잔존문제와 그 정확한 숫자는 추정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와 생존 여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그들 지역에 잔류하는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확인 작업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숫자

서주석 박사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를 50,000명으로 본다면 국군포로들이 살아 온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5,000~10,000명 정도만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⁹⁾ 그러나 1999년 9월말

38) 위의 책.

현재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여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미귀환 생존 국군포로는 244명에 불과하다. 이는 탈북 귀순자와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 숫자이며,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⁴⁰⁾ 이에 앞서 정부(국가정보원)가 1999년 3월에 발표한 미귀환 국군포로 숫자는 231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13명이 증가한 것이다.

생존 국군포로의 명단 공개는 국민의 관심과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남한의 연고자와 가족에게는 생존 확인의 기쁨과 상봉이나 귀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국군포로 및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위해가 염려될 뿐 아니라 신원확인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정부는 생존추정 포로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연고자로 확인된 국내가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3. 국군포로들의 취급과 인권실태

가. 국군포로들에 대한 대우 개관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39) 서주석,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연구,” p. 266. 그는 미귀환 생존 국군포로의 최소치를 2,000명, 최대치를 19,000명으로 보고 있다.

40) 이러한 사실은 1999년 9월 3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행한 발언에서 밝혀진 것이다. 「조선일보」, 1999년 10월 1일, p. 1. “임 통일, ‘북에 미귀환 국군포로 244명 생존’, 「연합뉴스 속보」, 1999년 9월 30일 참조.

들은 그 동안 북한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취급을 받았고,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는 미귀환 국군포로들의 대우와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탈북·귀순자들과 사지(死地)에서 생환해 온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마디로 동란기간 중 체포된 많은 국군들은 제네바 제3협약 및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되어야 할 포로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최초의 귀환 국군포로인 조창호씨는 1994년 10월 27일 한국전쟁 당시 체포된 국군포로의 불송환(不送還) 및 억류실태와 관련하여 “교화소와 특별수용소 등지를 전전하며 수천명의 국군포로들을 보았으나, 이들 중 남한으로 송환된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전이 이루어진 1950년대 중반 아오지에는 여러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5년간 수용된 뒤 다시 성분에 따라 평남의 강계교화소나 광산 등에 재배치되었다. 내가 이송된 아오지 제1 특별수용소에서 만도 300명 가량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같은 증언은 북한측이 1953년 포로송환 교섭때 “더 이상의 국군포로는 없다”고 한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그의 증언을 통해 한국동란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최소한 수천명이 정전과 함께 송환되지 못하고, 함경북도 아오지의 특별수용소, 평남 강계교화소, 광산 등에 수감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¹⁾

41) 『東亞日報』, 1994년 10월 25일, p. 29; 『朝鮮日報』, 1994년 10월 25일, p. 5, 동 10월 26일, p. 6, 동 10월 27일, p. 13, 동 10월 28일, p. 13 및 동 10월 29일, p. 13 참조. 이와 관련, 1953년 7월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도 그의 회고록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From the Danube to the Yalu)에서 “공산군측이 강제억류, 송환하지 않으려는 국군

국군포로들 중 상당수는 한국동란 중에는 강압에 의해 북한군에 재징집 당하여 전장에 투입되거나 긴급복구에 동원되었다. 즉 국군포로들은 척후병 등으로 최전선에 배치되어 방패막이로 활용되거나 인민군 후방사령부로 불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후방총국」에서 관리를 맡아 예컨대 파괴된 철도 등의 시설복구, 비행장 건설, 불발폭탄 제거 등의 사역(강제노역)을 함으로써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국군포로들은 정전이 성립된 1953년 7월 이후에도 계속 인민군 예하부대에 편성되어 전후복구사업의 명목 하에 계속 강제노역을 강요받았다. 특히 1953년 10월경부터 1956년까지는 이른바 인민군 예하부대 소속 ‘해방전사’ 신분으로 각지의 탄광·광산 등지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내각명령 00호에 의거, 전원 제대(석방)하여 북한공민으로 편입되었다. 국군포로들은 해방전사라는 딱지가 붙어 사회로 나갔지만, 북한의 계급구조 하에서 적대계층 내지 복잡군중으로 분류되어 일반 공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온갖 차별과 수모를 받았다. 국군포로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의 재정비 과정에서는 거의 모두 광산, 교화소나 수용소, 혹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게 되었다.⁴²⁾

이와 관련, 조창호가 증언한 교화소에서의 수형생활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다. 그가 증언한 내용은 개인에 국한된 체험담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국군포로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증언은 대략 다음과 같다.

포로 5만여명과 미군 944명을 포함한 유엔군포로 3,404명을 구출하기 위해 24개월 동안이나 더 싸우고 한국군측에 13만명의 사상자를 더 내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공산군측으로부터 그들을 송환받지 못했다”고 기술함으로써 다수의 국군포로들이 송환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42)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p. 21~22 참조.

“나는 아오지 제1 특별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거기만 해도 300명의 국군포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다. 억울하게 죽어간 국군포로중 특히 이복출신을 타도대상이 라고 하면서, 재판 등 정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장 열악한 교화소에 수감한 후 혹독한 고문과 매질을 가했다. 이유없이 구타로 얻어 맞아 죽는 사람, 멀건 강냉이 죽 두끼로 하루를 때우고 그것마저 먹지 못해 영양실조가 되어 죽은 사람, 영하 20도의 혹한에 얼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비일비재 했다. 살아있는 포로들은 죽은 사람을 보고도 우는 사람조차 없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다. 왜 죽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없었다.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일이 무덤을 만들어 주지도 못했다. 커다란 웅덩이를 파놓고 몇명씩 모아서 매장하기도 하였다. 아오지 뿐만 아니라 내가 북한의 교화소를 다섯 군데나 돌아 다니며 내 손으로 묻어 준 국군포로만도 100구가 넘었다.”⁴³⁾

현재 국군포로들은 광산이나 탄광, 통제대상구역 공장·집단농장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다. 국군포로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그 대부분이 장관도 제대로 깔지 못한 채 추위에 떨며 살고 있으며, 특히 생필품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⁴⁴⁾ 또한 국군포로들은 국가안전보위부에 등록되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북한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주민의 지위를 갖

43) 정석근,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한국포로는 송환되어야 한다,” pp. 36~37. 조창호는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서울대 미대 2학년에 다니다 포로가 된 리창순(30년생 추정, 만포 거주)씨, 아오지에서 1958년 사망한 김성태(육군 소령)씨, 최재규(육군소위)씨 등의 이름을 기억해 냈다. 「조선일보」, 1997년 6월 25일, p. 14.

44) 김정민, “국군포로와 이산가족들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 「北韓」, 1998년 6월호 (통권 제318호), pp. 48~49 참조.

게 되고, 당국의 주선으로 포로가 된 경험이 있는 인민군 출신 여성, 탄광노동자, 월남자 가족 등과 결혼하여 자식을 갖게 되었다.⁴⁵⁾ 그러나 가족들까지도 성분 불량자 가운데 가장 하급으로 분류되어 군입대, 입당, 대학진학이나 사회적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물론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다. 북한당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2~3차에 걸쳐 국군포로 출신자들을 통제구역과 농촌 등으로 추방시키는 국군포로 재정비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에 북한은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의 포고로 「반국가 파괴, 전복음모, 치안대 가담전력, 간첩 임무 등에 대한 자수 및 관대 처리방침」을 발표한 후 극히 소수인원에 대해 노동당 입당을 허용하고 행정간부로 임용하기도 했다. 또 국군포로의 자식들에 대해 대학입학이나 군대입대를 허용하는 등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⁴⁶⁾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수혜를 받은 국군포로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군포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소위 ‘남반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심지어 국군포로는 물론 그 자식들도 국군포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⁷⁾ 이와 관련,

45) 이러한 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국군포로는 대부분 한국동란시 인민군에 재입대한 경우이고, 인민군 재입대 등 북한당국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던 포로들은 지금까지도 교화소나 특별수용소에 수용되어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46) 허만호, “한국군포로의 북한억류실태와 송환문제,” 「북한」, 1998년 6월호 (통권 제318호), pp. 64~65.

47)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22. 조창호는 교화소 출소 후 탄광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민군 간호장교 출신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송환되었으나, 간첩혐의를 받아 같은 신세가 된 여인과 1964년 봄에 결혼하였다. 조창호는 결혼 후 아들 쌍둥이와 딸 하나를 두었지만, 보위부 요원들의 집요한 감시와 사생활 간섭으로 결국 강제이혼을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지속해야 했다.

1995년에 귀순한 이순옥씨는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자신의 수기에서 70년대 초반 온성군 일대 탄광지대에 수백 명의 국군포로들이 이주해 온 것을 목격했다고 밝히면서 국군포로들의 인권상황에 관해 귀중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노예노동을 강요당한 국군포로들은 월남자 가족 등 출신성분이 나쁜 여자와 결혼했으며, 자식들도 중학교까지만 교육이 허용되고 군입대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⁴⁸⁾ 그러기에 국군포로 출신자들이 북한사회에서 신분상승을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국군포로들은 북한사회의 최하위 신분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북한 전역에 엄습한 식량난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집단 거주하는 광산이나 탄광지역 등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식량과 의약품의 보급이 여의치 않아 사소한 병에 걸려도 쉽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⁴⁹⁾

48) 「조선일보」, 1997년 6월 25일, p. 14. 귀순자 서연철(1999년 1월 귀순, 함경북도 출신)과 유성희(1999년 7월 귀순, 강원도 출신)는 국군포로 자녀들의 생활에 관해 귀중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북한사회에서 국군포로 자녀들은 실력이 있어도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등 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국군포로 자녀들은 대학진학시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진학할 수 없으며, 체육대학과 경제대학 등 정치·사상적인 영향력이 적은 대학에만 진학할 수 있다. 직장생활도 당정기관 등 국가기관에는 취직할 수 없고, 일반공장과 기업소에 취직해서도 진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군 입대 역시 특수부대, 민경부대 등에는 복무할 수 없으며, 후방부대 공병국 등에 차출되어 육체노동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군포로 자녀들은 심한 사회적 차별대우로 인해 장래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삶에 대한 자포자기 의식이 강하며 때로는 아버지에게 대해 원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북한당국은 국군포로 가족 외에도 과거 지주가족, 한국동란시 전쟁포로로 복송된 사람들을 하위 성분으로 분류하여 차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귀순자들이 전하는 최근 북한실상」, 제188호 (1999.10), pp. 18~19.

49) 김용삼, “국군포로 양순옥씨 귀환기,” pp. 270~271;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22.

나. 국군포로 조창호·양순용·장무환의 북한내 생활

1953년의 포로교환 이래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조창호씨로부터 최근에 들어 온 양순용, 장무환, 김복기, 박동일, 손재술, 허판영, 박흥길씨 등 모두 8명이다. 이들의 귀환 및 증언은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귀환 후 기자회견을 가진 국군포로 출신자는 앞의 세 사람 뿐이다. 나머지 5명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 바 없으며, 이들로부터 특기할 만한 새로운 진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하에서는 조창호, 양순용, 장무환 3인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들의 북한내 역류생활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창호에 의하면 그는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하여 1951년 4월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고, 1951년 5월 제101 포병대대 관측장교로 작전 중 강원도 인제에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조창호는 얼마 후 조선인민군에게 인계되었다.⁵⁰⁾ 그는 영어를 할 줄 알고 관측장교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당국은 이 점을 이용하기 위해 집요한 회유와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몇 달간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조창호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정당한 포로의 대우를 요구하였다. 그는 수시로 탈출의 기회를 엿보던 중 감시자를 속이고 탈출하려 시도했다가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그러자 북한은 더 이상 그를 포로로 대우하지 않았다.

1952년 2월 북한당국은 그에게 ‘월남을 기도한 반동분자’라는 낙인

50) 동화연구소, “돌아 온 조창호 소위는 말한다,” 『同和』, 1994년 12월호, p. 77; 정석균,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한국포로는 송환되어야 한다,” 『北韓』, 1994년 12월호 (통권 276호), p. 36.

을 찍어 13년 노동교화형에 처하여 교화소(감옥)로 이송·수감하였다. 조창호는 동란 중에는 덕천, 서흥, 함흥 등지의 수용소를 옮겨 다녔고, 정전 성립 후부터 1958년까지는 아오지 제1 특별수용소, 1958년부터 1964년 5월까지의 강계교화소에 수감되었다. 무려 12년 6개월을 교화소에서 보낸 것이다.

조창호는 1964년 수형생활을 마치고 33세의 나이로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그는 곧바로 광산으로 끌려갔다. 변방에 위치한 자강도 중강진의 화풍광산(和豊鑛山, 아연광)을 시작으로 14년간의 광부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지하갱도에서 굴착기, 착암기 등을 이용하여 석탄을 캐는 등 중노동에 시달렸다. 온갖 험악한 일과 참혹한 인간 이하의 생활 때문에 조창호는 진폐증에 걸리는 등 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1975년부터 조창호를 반동계급이라는 이유로 국경 변방지역으로 몰아 냈다. 그는 중강진 호하(湖下) 구리광산으로 이동배치되어 간신히 연명을 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시달려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자 1977년 현업에서 물러 나게 되었다.⁵¹⁾

조창호에 이어 양순용이 1997년 5월 중국에 있는 친척의 권유에 힘입어 탈북을 결심하고, 같은 해 12월 24일 귀환하여 두 번째 생환 국군포로로 기록되게 되었다. 양순용은 1953년 7월 금성지구 전투에서 중공군과의 전투중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되었다. 양순용도 조창호와 마찬가지로 포로수용소와 탄광을 전전하였다. 그는 잠시 회양과 강동군의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1953년 9월에 아오지 탄광으로 이송되었다. 그 후 인민군 1701부대에 편입되어 광부의 신분으로 강제

51) 위의 글, pp. 36~38 참조; 제성호, “북한의 國軍捕虜에 대한 待遇의 人道法의 考察: 조창호 소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人道法論叢』, 제15호 (1995), pp. 115~116.

노동에 동원되었다. 1956년 6월에 부대가 해산됨에 따라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았으나, 귀환하지 못하고 계속 북한에서 광부로 살 수밖에 없었다.⁵²⁾ 그는 귀환 전까지 북한에서 포로 출신이라는 성분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갖은 고초와 차별대우를 겪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양순용에 이어 장무환이 1998년 9월 3번째로 귀환하였다. 그는 1998년 7월 초 “남한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이 되었으니 만나보라”는 권유에 따라 같은 해 8월 11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하고 제3국에서 은신·체류하다가 인천항으로 입국, 귀환하였다. 장무환은 1953년 7월 금화지구 전투에 투입되어 경계임무 수행 중 중공군의 공격 및 수류탄 파편에 맞아 파편상과 총상을 입어 포로로 체포되었다.

장무환은 북한의 포로수용소와 탄광에서 자신이 겪었던 열악한 생활실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한 바 있다.

“1953년 10월초에서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약 10일간 평안남도 강동군 강동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인근 건물, 도로 보수작업 및 제거 작업에 투입되었다. 급식은 조 및 수수밥 200g, 된장, 김치 등을 제공 받았다. 그 후 1953년 10월 중순부터 1954년 1월까지 평안북도 천마광산에 수용되어 300~400m 깊이의 갱도 안에서 철광석 운반 및 채광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때 급식은 1일 백미·잡곡 등 800g, 산나물, 된장, 기름 등을 지급받았는데, 포로들은 직접 취사를 하며 살았다. 1954년 1월 10일부터 1956년 6월까지 함경북도 셋별군 하면 탄광에 수용되었는데, 이 때 탄광 굴진공, 채탄공, 운반공 등으로 분류되어 1일 3교대 8시간씩 고된 작업을 하였다. 작업 실시 후에는 정치사상 학습 및 안전교육을 받았다.”⁵³⁾

52) 김용삼, “국군포로 양순용씨 귀환기,” p. 274.

53) 국군포로 출신 장무환씨의 증언.

다. 기타 국군포로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관한 기타 증언

이 밖에도 북한이 미귀환 국군포로들을 불법적으로 대우했던 증거들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속속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6.25 당시 북한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탈출한 이기봉(작가)씨와 한국 동란 중 월북하여 황해도 봉산소재 서울정치학원을 졸업하고 중앙당 서울지도부 재정경리부 지도원으로 일하다 1951년 숙청당하여 남한에 귀순해 온 이항구씨의 증언, 그리고 1990년 대 중반에 탈북·귀순해 온 사람들의 몇몇 고발적인 증언을 인용하기로 한다.

먼저 이기봉씨는 미귀환 국군포로들인 박광혁 대령, 박승일 대령, 고근홍 대령, 김영로 대령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미송환된 국군포로 가운데는 5명의 연대장이 포함되어 있다. 중공군이 참전한 직후인 1950년 11월 하순 덕천(德川), 영원(寧遠), 맹산(孟山) 등 평안남·북도의 중부 산악지대에서 중공군 13집단군의 대량 기습 및 포위공격에 격파당한 한국군 6사단 19연대장 박광혁 대령, 7사단 5연대장 박승일 대령, 8사단 10연대장 고근홍 대령과 21연대장 김영노 대령 등이 그들이다. 그 밖에도 1950년 11월 중공군에 포로가 된 대대장, 부연대장, 사단참모 및 직할부대장, 연대참모 등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들이 최소한 1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앞서의 연대장들과 함께 정전 후 대부분 송환되지 못했다. 이들 포로가 된 국군장병과 유엔군 포로들은 대부분 압록강변 현재의 자강도 화풍광산에 수용되었다.⁵⁴⁾

1950년 12월에서 1951년 2월까지 북한군 인민군 총정치국 및 내무

54) 이기봉 자신도 덕천에서 박승일 대령과 함께 포로가 되어 화풍광산에 수용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 한국으로 생환하였다. 이 화풍광산은 조창호 소위가 중노동에 시달렸던 곳이기도 하다.

성 정치보위국은 앞서 4명의 연대장을 전범으로 규정, 전쟁을 도발했다는 자백서 작성과 대내외 선전방송을 강요하였다. 이 때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하수인으로 1949년 5월 월북한 표무원(전 한국군 소령, 현 평북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강태무(전 한국군 소령, 현 양강도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와 1950년 6월 북한측으로 전향한 송호성(전 한국군 준장) 등이 동원되었다.⁵⁵⁾

정전 성립 후 14년이 지난 1967년 당시 귀순한 거물간첩 강대진은 박승일 대령과 고근홍 대령 등을 포함한 수십명의 국군포로들이 황해북도 송림시(松林市) 황해 제철소와 황해남도 은율(殷栗)광산, 재령(載寧)광산 등지에 노동자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요컨대 지금 북한땅에서는 지난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포로로 잡힌 수만명의 한국군 노병들이 아직도 자유를 찾아 구원을 고대하면서 눈물짓고 있다.”⁵⁶⁾

다음 인민군 출신 이항구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영변 약산 동대에 있던 조선인민군 제22여단으로 가게 되었다. 이 부대는 1951년 10월 9일 창설되었으며,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로들이 병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중사계급을 달고 정찰중대의 분대장을 맡았다. 이 부대의 훈련은 주로 정치사상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포로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6~8개월간의 훈련을 받은 뒤 22여단은 해체되고 부대원들은 몇 군데로 나누어졌다. 내가 간 곳은 인민군 584부대였다. 이 부대는 철도복구를 주임무로 했으며, 산하의 3개여단 병력은 모두 포로들이었다. 사령관은 팔로군 출신의 김주봉 중장이었다.

55) 그러나 이미 죽음을 각오한 4명의 연대장은 이를 완강히 거절하여, 화풍광산 사무실과 그 지하실에서는 소름끼치는 연대장들의 비명소리가 수시로 밖으로 새어 나왔다고 한다. 이기봉, “5만 국군노병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pp. 38~39 참조.

56)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國際人權報』, 1995년 1월 15일자, p. 2.

국군포로들로 편성된 또 하나의 부대는 218군 부대였다. 이 부대는 비행장 복구작업에 투입되었다. 평양, 신의주, 황해도 온천과 황주 등 4개 지역에 비행장이 있었다. 포로들은 미군이 공중촬영을 하더라도 포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 인민군 보장과 계급장으로 위장했다.

북한에 포로가 되었던 국군들은 대개 3가지로 분류, 처리되었다. 첫째는 현지부대에서 바로 전투나 정찰 등에 투입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건설부대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 숫자가 가장 많았다. 셋째는 평북 벽동군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였다. 정전 후 송환된 포로는 대부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두 경우는 거의 돌아오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 성립후 국군포로들을 제대시키기 시작해 1956년에 완전히 정리했다. 이들은 대부분 광산, 협동농장, 공장 등에 배치되어 중노동을 해야 했다.⁵⁷⁾

1995년에 귀순한 이순옥씨는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수기에서 함북 온성탄광에서 경상도 출신의 김경조, 충청도 출신의 이종구·김종운씨 등 국군포로를 목격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70대 초반의 김경조씨는 “내가 있던 수용소에서는 국군포로 가운데 단 한 명도 남한에 송환된 사람이 없었다”며 경상도에 사는 부인과 두 아들을 늘 그리워했다고 한다. 1960대 초반의 이종구씨는 총각으로 6·25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으며 술만 먹으면 ‘살아서 부모님을 봐야 한다’고 통곡했다고 한다. 김종운씨는 “임신한 아내를 남한에 두고 왔다. 아직도 나를 기다릴 것”이라며 북한의 아내에게 “통일이 되면 남한의 부인에게 간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함경남도 용양광산에서 일하다 1996년 8월 홍콩을 통해 귀순한 동용섭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함경남도 허천군 용양광산(마그네사이

57) 위의 글; 허만호, “한국군포로의 북한억류실태와 송환문제,” p. 63.

트광)의 경우 전체 광산노동자 1만여명 중 1천여명이 국군포로였으며, 인근 검덕광산에서는 수천명의 국군포로가 엄중한 감시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⁵⁸⁾ 동용섭씨는 국군포로들이 1950년대 중반까지 철로변에 떨어진 유엔군의 불발탄을 제거하는 공사판 등에 동원되었다가 50년대 후반부터 탄광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1996년에 귀순한 김용화(전 함흥철도국 승무지도원)씨는 “함남 단천에서 김갑생이라는 국군포로가 살았다”며, “그의 출신성분 서류에서 국군포로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용화씨에 따르면 김갑생씨는 용변을 수거하는 등 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⁵⁹⁾

58) “미송환 국군포로 2만명; 북 탄광·공사장서 혹사,” 「한국일보」, 1997년 6월 25일, p. 34.

59) “용양-검덕광산 등에 수천명 집단수용; 귀순자가 전하는 실태,” 「문화일보」, 1997년 6월 25일, p. 3.

III. 제네바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

1. 제네바 제3협약의 남북한에 대한 拘束力

본래 조약은 당해 조약의 내용이 이미 국제관습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당해 조약의 형성에 참가하고 정식의 당사자가 된 국제법주체만을 구속한다고 함은 조약법상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남북한은 모두 제네바 제3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⁶⁰⁾ 또한 이 당시 제네바 제3협약은 아직 국제관습법화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동란 기간중 제네바 제3협약이라는 다자조약에 아직 당사자가 되지 않은 남북한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이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네바 제3협약의 비당사국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제네바협약의 비당사국일지라도 동 협약에 기속(羈束)되고자 하는 자발적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그와 같은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동 국가가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한국동란 당시 남북한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60) 남한은 1966년 8월 16일, 북한은 1957년 8월 27일 각각 제네바 제3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시제법(時際法, inter-temporal law)의 원칙에 따라 제네바 제3협약은 남북한이 이 협약에 가입하기 전인 한국동란 기간중에 발생한 전쟁포로의 대우문제나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송환문제에 대해 소급적용될 수 없다(물론 앞으로 다시 남북한간에 전쟁에 준하는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로의 대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남북한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당연히 제네바 제3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한국동란 시 전쟁포로의 대우문제에 관하여는 남북한 및 유엔군사령부가 명시적으로 표명한 의사표시(즉 제네바 제3협약에 기속되고자 하는 기속적 동의의 표시)에 의해 비로소 제네바 제3협약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7월 4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체포된 북한군을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⁶¹⁾ 이어 다음 날인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협약의 조건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1950년 7월 13일 북한의 부수상 겸 외무상 박헌영도 제네바 제3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전문(電文)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바 있다.⁶²⁾

여기서 북한은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비해 남한은 제네바협약의 조건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통합군, 즉 유엔군의 사령관은 단지 인도주의원칙(人道主義原則)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언급하였던 점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유엔군사령부가 언급한 ‘인도주의’가 1907년의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⁶³⁾을 말하는 것인지, 1929년에 체결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⁶⁴⁾인지, 아니면 1949년의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그 후 한국동란 당시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포로대우와

61) 유엔군사령관의 선언은 미국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한국동란 당시 미국은 제네바 제3협약의 서명국이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1950년 7월 3일 미국무부는 ICRC와 협조하여 제네바 제3협약의 ‘인도적인 원칙’(humanitarian principles)을 준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네바 제3협약이 “자본주의자, 전쟁광, 부르주아들의 문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다가, 1952년 7월 13일에 의견을 번복하여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서주석,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연구,” p. 261.

62) 농 전문의 내용은 “본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이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의 재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귀하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였다. *New York Times*, July 14, 1950; William L. White, *The Captives of Korea*,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韓國戰爭捕虜」(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 6 참조.

63) Leon Friedman, *The Law of War: A Documentary History* - vol. I (New York: Random House, 1972), pp. 308~323 참조.

64) *Ibid.*, pp. 488~522 참조.

관련하여 행한 대우(追後慣行)는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유엔군측의 제네바 제3협약 준수외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⁶⁵⁾

한편 한국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공한」에 의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하여, 유엔군사령관의 상기 의사표시가 한국군 당국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다.⁶⁶⁾ 따라서 한국동란 당시 남북한이 모두 제네바 제3협약에 구속되었고 또한 남북한이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정부와 유엔군측은 제네바 제3협약을 성실하게 이행·준수하였다. 즉 대한민국과 유엔군사령부는 각지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하여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공산군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였으며, 전시에 인도적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ICRC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즉 대한민국은 드 레이니에를 포함하여 2명의 ICRC대표가 남한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ICRC대표들은 남한에서 포로수용소를 시찰하는 한편, 유엔군이 억류

65) 한편 유엔군사령관의 선언 및 북한 의무상의 전문에 따라 제네바 제1, 제2, 제3, 제4협약이 한국동란시 모든 교전자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김명기, 「국제인도법상 비전향 출소자의 포로지위 검토,」 「人道法論叢,」 제15호 (1995), p. 43 참조. 이러한 견해에 비해 한국동란시 적용된 것은 제네바 제3협약과 4개의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규칙들 가운데 제3협약 이외의 것은 이미 관습법화된 규칙들을 성문화한 것인 경우에만 관습법의 자격에서 적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민경길, 「제네바협약 50년과 한국: 회고와 전망,」 대한적십자사·대한국제법학회, 「국제인도법의 도전과 과제,」 제1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발표자료집, 1999.11.19, p. 53.

66) 이와 관련,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선언은 한국이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시점인 7월 14일 이전인 7월 10일에 행해졌는데, 이 선언이 한국에도 효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는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수법자에게 유리한 대우는 가능한 한 적용되도록 하는 법원칙, 7월 5일자 이승만 대통령의 다짐(이러한 대통령의 다짐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음), 7월 14일 이후에도 남북한이 제네바 제3협약에 기속되고자 하는 직·간접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제네바 제3협약 준수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고 있던 모든 공산군 포로의 명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네바의 중앙포로정보국으로 송부할 수 있었다. 또 공산군 포로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도 했다.⁶⁷⁾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제네바 3협약의 이행은 말 뿐이었고, 실제로는 실천의지가 없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1950년 7월 5일 생포한 유엔군 포로 110명⁶⁸⁾의 명단을 동년 8월 18일과 9월 14일 두 번에 나누어 ICRC본부에 보고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사실,⁶⁹⁾ 그리고 그 뒤 공산군측이 ICRC의 포로수용소 방문요구 등을 모두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⁷⁰⁾

67)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70년사」 (서울: 대한적십자사, 1977), pp. 158~159 참조.

68) 북한은 이 날 수원 남쪽 오산(죽미령) 전투에서 미군 제24사단 제21연대 소속 스미스 기동부대의 장병들을 생포하였다. 이들이 북한에 의해 체포·억류된 최초의 유엔군포로였다.

69)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70년사」, p. 158; 이기봉, “5만 국군노병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pp. 33~35 참조.

70) 서주석,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연구,” p. 261. 북한은 6.25 남침 초기에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포로관리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직적인 포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유엔군 포로가 자꾸 늘어나자 군사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의 결정에 따라 1950년 8월 중순경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후방총국(일명 후방사령부, 사령관 金烈 중장)에서 국군포로의 관리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반면 미군과 기타 유엔군 포로는 중공군이 전담하였다. 이기봉, “5만 국군노병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p. 40. 한국동란 당시 북한에는 벽동, 화동, 천마, 우시, 외귀, 만포진, 삭주, 복진, 강동, 황주 등 10개의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戰況의 추이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1950년 10월 중공군 참전 이후에도 상당기간은 포로관리가 매우 엉성하여 50% 정도의 포로들이 餓死하였다. 1951년 초에 와서야 영구적인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포로의 사망율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金幸福, 「韓國戰爭의 捕虜」, pp. 89~93 참조. 그나마 국군포로들은 한국동란 기간 중 대부분 재징집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포로수용소에서 수용된 자는 거의 없었다.

2.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평가

여기서는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대우를 제네바 제3협약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의 처우와 행위를 ① 포로 억류국으로서의 기본적 의무 위반, ② 포로의 대우 및 보호 의무위반, ③ 송환의무 위반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 정전 후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북한당국이 이들에 대해 기본적 인권보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에 관한 내용이므로 여기에 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가. 포로억류에 따른 기본적 의무 위반

북한은 한국동란 기간 중 포로억류국으로서 포로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첫째, 북한은 기본적으로 인민군에 포획된 국군포로들을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군포로를 그들의 전투력 증강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강압에 의해 다수의 국군포로들을 북한군에 재징집하여 이들을 전장에 투입시키거나 긴급복구 등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국군포로를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재징집한 행위는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 위반이다.

둘째, 포로는 지상에 소재하고 위생상·보건상의 모든 보호를 주는 건물에 억류해야 하며(협약 제22조 1문 및 제29조 1문), 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투지대의 포화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보내거

나 억류하지 못한다(협약 제23조 1문 전단). 포로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은 습기가 완전히 방지되고, 충분한 난방과 일몰부터 소등시까지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제25조 4문). 조창호를 비롯한 많은 국군포로들도 이와 같은 곳에 수용되어 포로로서 대우받아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들을 교화소에 보내어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포로로 대우했어야 할 조창호에 대하여 13년간 부당하게 교화노동형의 형벌을 부과했던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군포로들을 제네바 제3협약이 정한 조건을 갖춘 포로수용소에 수용해야 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은 포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창호 소위를 비롯하여 박광혁 대령, 박승일 대령, 고근홍 대령, 김영로 대령 등과 같은 자가 그의 권한내에 들어 오면 먼저 이들의 신분에 관하여 신문(訊問)을 한 후 그들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협약 제17조 3문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 자들에 대해서는 포로로 대우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포로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해 회유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을 뿐, 포로들에 대한 신분증명서 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넷째,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하면 어떤 자가 포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지위가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는 포로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협약 제5조 2문 참조). 따라서 만일 북한당국이 조창호 또는 기타의 자들에 대해 포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의적(恣意的)으로 포로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부당하게 비인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북한은 이들이 포로적격(捕虜適格)을 구비하고 있는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권한있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에 회부하였어야 한다. 그

러나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없다. 결국 북한은 제네바 제3협약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포로는 그들의 억류조건에 관하여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 이에 관하여 군당국에 요청할 권리와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 직접 보호국의 대표에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협약 제78조). 보호국의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는 포로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갈 수 있으며, 포로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출입할 수 있고 포로, 특히 포로의 대표와 입회인 없이 회견할 수 있다(협약 제126조). 북한은 조창호 등의 국군포로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懈怠)하였다.

여섯째, 이 외에도 교전국은 전쟁개시 직후 포로에 관한 공공의 정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포로정보국은 포로의 수용·이동·석방·송환·도주·입원 및 사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공사(公私)의 모든 문의(問議)에 답하며 송환·석방·도주·사망 등으로 포로가 남긴 모든 유류품(사용물)을 모아 관계국에 송부함을 그 임무로 한다(협약 제122조~제123조). 북한이 한국동란 기간중 포로정보국을 설치하여 포로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

이기봉의 증언에 의하면 인민군은 포로가 된 4명의 국군 연대장, 즉 박광혁 대령, 박승일 대령, 고근홍 대령, 김영로 대령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들에게 6.25 북침론 조작에 관한 전쟁도발 자백서 집필과 대내외 선전방송을 강요했다고 한다.⁷¹⁾ 이들이 완강하게 거부

71) 이기봉, “5만 국군노병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p. 38.

하자 북한당국은 무자비한 고문을 실시했다고 한다.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고문 사실은 조창호의 증언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한 국동란 기간 중 국군포로를 회유하다가 안되면 자백을 얻어내 자기들의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고문이나 학대 등 비인간적인 수단의 사용을 불사하였다. 국군포로가 북한지역 출신라는 이유만으로도 모진 고문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같은 국군포로에 대한 고문은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 제17조 8문의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⁷²⁾

제네바 제3협약상 포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포로는 동일한 지역에 숙영하는 억류국의 군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식사·식량·피복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고, 억류당국은 포로에게 충분한 음료수를 공급해야 하며, 흡연을 허가해야 한다. 장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하사관은 감독의 일 이외의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이나 목적을 가진 노동을 부과할 수 없다. 참호를 파거나 포탄을 운반하는 것은 군사적 성질이나 목적을 가진 노동이므로 이를 시킬 수 없다.⁷³⁾ 그리고 노역을 하는 포로의 경우에는 억류

72) 이 고문금지 의무는 위반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의무로 간주된다. 藤田久一, 「國際人道法」(東京: 世界思想史, 1980), pp. 149~150; 1945년 Wuppertal의 영국군법회의는 포로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과열된 방에 포로를 감금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Hersc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2, 7th ed. (London: Longmans, 1952), p. 378, note 3; 다만 모든 포로는 심문을 받을 때 그의 성명·계급·출생년월일·소속·군번을 진술해야 하며,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사항을 진술할 의무를 진다(협약 제17조 1항). 포로의 진술의무는 상기 사항에 대해서만 국한된다. Ger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1), p. 663; 물론 포로가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를 취득하는데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Yoram Dinstein, "Prisoners of War,"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4 (Use of Force·War and Neutrality·Peace Treaties) (Amsterdam·New York·Oxford: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2), p. 148.

73) 억류국은 포로의 노동을 이용할 권리(포로사역권)가 인정되나, 포로의 노동

당국에 의하여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다.

그러나 북한은 이상의 그 어느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준수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은 조창호를 ‘월남을 기도한 반동분자’로 몰아 그의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무참히 유린하는 것은 물론, 장교에게 금지되어 있는 강제노동을 부과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강제노동의 내용은 군수공장에서 포탄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이것은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군사적 성질과 군사적 목적의 노동이었던 바,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협약의 이중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군포로들이 북한군대의 구성원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이나 폭격으로 파괴된 비행장을 복구하는데 국군포로를 강제로 동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일 수많은 포로들이 목숨을 잃도록 방치한 행위도 역시 제네바 제3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편 포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편지나 엽서를 보내고 받을 것이 허가(협약 제70조 및 제71조 1문 참조)되어야 하는 데도, 북한은 전쟁중은 물론 조창호의 귀환 직전까지도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그래서 멀쩡하게

은 군사작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참호를 파거나 병기·탄약을 제조·운반하는 것은 군사적 성질이나 목적을 가진 노동이므로 억류국은 이러한 노동을 포로에게 강요할 수 없다. 또한 포로에게 전투부대에 대한 보급물자의 수송 등을 강제할 수 없다. 요컨대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military character)이나 군사적 목적(military purpose)을 가진 노동을 부과할 수 없다. Mar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pp. 210~211 참조; 이것은 협약 제50조 1문 (c)호 및 (f)호의 해석에 따른 결과이다. 여기서 금지대상인 군사적 성질이나 군사적 목적의 노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용어의 해석·적용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요새를 구축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과 군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나, 군용 테니스코트를 닦는 것은 군사적 성질을 가지나 군사적 목적은 없는 것이다. H. S. Levie, "The Employment of Prisoner of War," *Military Law Review*, vol. 23 (1964), p. 62, note 70; 藤田久一, 「國際人道法」, pp. 151~152 참조.

살아 있는 사람도 국첩묘지에 위폐가 설치되도록 방지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⁷⁴⁾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외면하는 반문명적인 작태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은 북한이 포로들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인 대우 조차 부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다. 송환의무 위반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하면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 및 송환은 「지체없이」(without delay)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라 함은 포로의 석방 및 송환행위의 실시에 필요한 시일 이상 지연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교전국간에 현실적인 전투행위가 정지되면 당사국(포로의 억류국)은 즉각 포로를 송환하여야 하며, 특히 중병자 또는 중상자인 포로의 경우 그가 수송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면 그 계급과 수를 막론하고 본국에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적대행위가 종료, 즉 1953년 7월 남북한간에 정전이 실시된 직후 국군포로를 즉각 유엔군측에 인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조창호를 비롯한 수많은 국군

74) 정전 직후인 1953년 강원도 철원전투때 실종된 이우진씨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6.25 당시 **사단 *연대 소속 사병으로 참전하였는데, 정식 전사통지서가 오지 않아 가족들은 3년뒤 그를 전사자로 등록시켰다. 가족들은 1992년에야 그의 유품을 모아 국첩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현재 대전 국첩묘지 사병묘역에 무덤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우진씨는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 있고, 최근 호남 옛 고향 주소로 보낸 편지에서 가족들을 찾고 싶다며 가족 이름들과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어 보냈다고 한다. 이우진씨는 편지와 함께 젊었을 때 북한에서 찍은 사진 한장도 동봉해 왔는데, 이산가족 연결 주선단체인 「한겨레상봉회」가 중국동포를 통해 편지와 사진을 입수, 1994년 7월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朝鮮日報」, 1994년 10월 28일, p. 31 참조.

포로들을 전쟁포로 송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북한지역내의 여러 교도소로 분산·수감하였다(조창호의 경우 아오지 제1 특별수용소로 이송). 다시 말해 북한은 체포된 국군들을 포로가 아닌 죄수로 취급했으며, 포로송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던 것이다.⁷⁵⁾ 이는 명백히 제네바 제3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정전 후에 국군포로들을 광산과 공장 등에 배치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제네바 제3협약에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포로가 송환을 거부하고 억류국 또는 중립국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해 제네바 제3협약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1953년 정전 당시 포로의 송환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또한 제네바 제3협약의 중대한 맹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⁷⁶⁾

인도적인 견지에서 볼 때 모든 포로의 일률적인 강제송환은 오늘날 인정되기 어려우며, 포로의 자유의사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그의 희망에 따라 송환과 잔류 내지 중립국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자유송환원칙을 견지할 경우 조창호 등 국군포로가 북한에 잔류할 것을 희망하였다면 그들의 귀환을 강제하는 것은 일응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다수의 국군포로들이 송환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75)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다수의 국군포로들을 전사(戰死)한 것으로 처리케 함으로써 국립묘지에 유해 없이 위패로 봉안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76) 이에 관한 논의에 관해서는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2nd Impression (New York: Reinhart and Company Inc., Publishers, 1959), pp. 680~683; Richard Baxter, "Asylum to Prisoners of War,"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0 (1953), p. 489; J. D. Clause, "The Status of Deserters Under the 1949 Geneva Prisoner of War Convention," *Military Law Review*, vol. 11 (1961), p. 29; Yoram Dinstein, "Prisoners of War," pp. 150~151; 藤田久一, 「國際人道法」, pp. 154~156; Ger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pp. 663~664; Mar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10,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8367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 pp. 250~263 참조.

있으나, 여러가지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송환을 거부(또는 북한에 대해 비호를 청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은폐의 의혹을 질게 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북한은 제네바 제3협약과 정전협정에 위반하여 국군포로의 지체없는 석방 및 송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평가라고 하겠다.

IV. 남한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장애요인

1.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인식

가. 남한의 기본인식

남한에서는 포로라는 개념은 ‘전투에서 적에게 사로잡힌 병사’ 또는 ‘적의 권력내에 떨어진 자’(have fallen into the power of the enemy)⁷⁷⁾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포로는 전쟁중에 교전 상대방에게 포획·억류되어 자유를 박탈당했으나, 일반국제법이나 특별협정에 의해 대우가 보장된 적국민으로서 스스로 적의 세력에 들어간 귀순자나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전쟁범죄인(전범)과는 구별된다. 또한 포로는 전투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전투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시각에서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쟁포로의 정의 및 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전투임무 수행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해 억류 중인 자를 말한다(제70조).” 그리고 “포로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 및 유지하고(제74조 제2항), 군사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할 수 없다(제75조).”

남한은 국군포로문제가 동족상잔인 한국동란이 낳은 비극적인 산물인 동시에,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서둘러 포로송환

77) 李漢基, 「國際法講義」, 新訂版 (서울: 博英社, 1997), p. 758.

협상을 끝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남한은 국군포로문제가 한국동란과 정전체제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⁷⁸⁾

그러기에 남한은 국군포로문제가 한국동란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군포로의 수를 고의적으로 은폐함으로써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못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군포로문제를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전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군포로문제를 남북한간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의 하나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정립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무관심 속에서 미귀환 국군포로들을 방치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군포로들을 방치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78) 전쟁이 종료되면 교전국간에는 통상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적대행위를 종료하게 되는데, 한국동란의 경우에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반세기 동안이나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즉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포로문제도 통상 적대행위 종료후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종결되는 데 비하여, 한국동란 중에 발생한 국군포로문제는 정전의 성립을 전후한 포로교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동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두된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세계의 양극화 현상, 동·서세력간의 분단과 대립이 낳은 '냉전'이라는 갈등구조 속에서 배태된 무력충돌이었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행위가 중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쌍방이 전쟁포로의 실체와 숫자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둘러 포로교환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다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24. 이 외에도 북한은 공산측의 이념투쟁에 기초한 입장과 전쟁수행 및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상당수 국군포로들의 존재를 은폐하고, 이들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 하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전협정 체결 후 장기간 계속된 한반도 냉전체제와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직접협상과 타협에 의한 국군포로 송환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남한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하여 여러 차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북한측에 제기하였지만, 북한측의 거부자세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은 점차 국군포로 송환의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자포자기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국군포로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북한은 국군포로문제를 인도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그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둘째, 남한정부는 북한측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이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문제를 들고 나와 대남 역공세와 선전·선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군포로문제가 미궁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였다.

셋째, 국군포로 가족들은 정전 후 상당 기간 동안 연좌제가 공공연하게 실시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 대해 한국동란 중 실종자의 소재 파악 및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였다.

넷째, 남한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및 포로송환협정에 따라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일단락된 후 더 이상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내의 관련 자료 축적에 실패했고, 관련 법률적·제도적 장치나 인적·물적 자원이 구비되지 못하여 송환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⁷⁹⁾

그러나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귀환 및 재북 국군포로의 참상에 대한 증언을 계기로 한국동란시 북한당국에 의해 생포된 국군포로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남한정부는

79) 허만호, “한국군포로의 북한억류실태와 송환문제,” p. 62 참조.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

나. 북한의 기본인식

북한은 포로에 대해 ‘적의 군대나 인원을 사로잡는 것 또는 사로잡은 적의 군대나 인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⁸⁰⁾ 여기서 적은 이념적인 요인 또는 정치·사상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은 포로를 이념적으로 대결하는 적의 군사조직의 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포로는 인도적 대우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억압과 독재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조선노동당은 국군포로들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조직과 인민대중의 감시와 통제 밑에 두고 검증하여 과거사를 진실로 뉘우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믿되, 끊임없이 단련·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검증과정에서 자기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피동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린다”는 것으로 집약된다.⁸¹⁾ 그러나 의거입북이나 귀순의 경우 북한은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전쟁중 북한에 체포·억류된 국군’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국군포로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동란 기간 중 북한군에 의해 억류된 국군은 해방전사라고 불리우기 때문이다. 해방전사란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한의 군에서 종사하다 포로가

8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806.

81) 김정민, “국군포로와 이산가족들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 pp. 44~45 참조.

된 후, 북한이 진짜 조국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귀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 한다.⁸²⁾ 이 같은 배경에서 북한당국은 아직까지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 북한주민들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남한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북한당국자들은 그들의 말과는 달리 북한에 국군포로 출신자가 많이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군포로에 대한 온갖 억압과 차별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국군포로의 인권실상은 북한이 국군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

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추가송환 요구

정전협정에 따라 실시된 포로교환이 종료된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는 포로의 추가송환문제를 공산군측에 계속 제기하였다. 유엔군측은 정전 직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공산군측에 포획된 것으로 확인된 인원 중에서 한국군 1,647명과 미군 389명을 포함한 2,233명의 유엔군 포로를 공산측이 아무런 해명없이 송환하지 않았음을 추가송환문제 제기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8월 28일부터 1964년 12월 14일까지 11차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포로송환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때 남한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문제의 협의를 북한측에 요구하였다.⁸³⁾ 이 당시까지 유엔군측은 주로 군사정전

82) 「조선일보」, 1997년 6월 25일, p. 14.

위원회 본회의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후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 서한을 통해 북한측에 대해 미귀환 국군포로의 존재에 대한 해명과 즉각송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결같이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하였고 북한내에는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석방한 반공포로 27,000명이야말로 억류포로”라고 주장하고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결과 우리측의 10여년에 걸친 포로송환 노력은 북한측의 일관된 억지주장에 부딪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⁸⁴⁾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열렸던 남북대화에서도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시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분단과 한국동란으로 발생한 1천만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 확인, 상호 서신교환, 상호 방문과 상봉, 재결합을 주선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본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1992년 2월 19일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동년 9월에 서명·발효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라 함)에서는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었다.⁸⁵⁾ 그리고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남북한간의 인도적 사안의 협

83)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60년대 초까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포로송환 문제가 논의된 것은 모두 11차례였다. 그것들은 제15차('53.8.28), 제18차('53.9.9), 제20차('53.9.21), 제21차('53.9.28), 제33차('53.12.18), 제36차('54.1.13), 제37차('54.1.23), 제47차('54.8.17), 제67차('55.11.26), 제94차('59.1.22), 그리고 제195차('64.12.14)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들이었다. 유엔군측은 제47차, 제67차, 제195차 본회의에서 미귀환 국군포로문제에 대해 해명이나 자료제출을 북한측에 요구한 바 있다.

84)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29.

85)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제3장 제15조 내지 제18조 참조.

의·해결을 남북적십자사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11차 본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하거나 또는 국군포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범정부차원의 기구 구성 및 국군포로 송환대책 마련

국방부는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귀환 직후 국방부 인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로송환촉구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관련있는 각종 정보자료 수집, 법률문제 검토, 국군포로 송환촉구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군포로에 관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포로송환촉구대책회의」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1996년 7월 국방부 정책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군포로·실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군포로문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안문제 발생시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그 동안 이 「국군포로·실종자 대책위원회」는 몇가지 중요한 활동을 해 왔다.

첫째, 먼저 한국전쟁 다시 실종처리 인원을 재검증하고, 정부 관련 부처와의 업무분장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둘째, 국군포로·실종자 명단의 전산화 및 확인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렇게 작성된 실종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공개하여 유가족의 추가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셋째, 그 동안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유가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실종자 전원을 전사처

리함으로써 유가족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넷째, 1998년 11월 국군포로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군포로·실종자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였고, 귀환포로들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다섯째,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1월 29일자로 공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⁸⁶⁾

한편 정부는 1997년 9월 처음으로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침을 정립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포로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둘째, 실현가능성과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한다.

셋째, 납북자, 이산가족과 연계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포괄적 해결 대책을 모색한다.

넷째, 각종 남북회담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기구와 협조를 강화한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새 정부는 위와 같은 정부 방침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추진방침을 마련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국민의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 1998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회담, 귀환 국군포로 양순용씨의 생존포로 관련 증언 등이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국가를 위해 싸운 사람들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군포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1998년 4월 30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재설정하기에 이른다.

86)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p. 34~35 참조.

첫째, 국군포로·실종자 문제를 국가의 본분과 책임 차원에서 접근한다.

둘째,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환한다.

셋째, 다각적인 문제 해결의 통로를 모색한다.

넷째, 국민의 신뢰 및 지원을 확보한다.⁸⁷⁾

최근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군포로가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 중의 지원,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포로 2세에 대한 지원, 귀환포로와 동반 귀환한 포로 자녀에 대한 혜택 부여, 국제기구에 국군포로 송환문제 제기 등 국방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1월에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처 등 유관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⁸⁸⁾ 앞으로 「국군포로대책위원회」는 국군포로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다.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귀환 국군포로 지원

현재 정부는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5호)에 의거하여 귀환 국군포로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군포로 귀환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못하지만, 인도적

87) 위의 책, pp. 27~28 참조.

88) 위의 책, p. 35.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이 장차 국군포로의 귀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은 대체로 이러하다. 그동안 하사관급 이상의 간부였던 귀환 국군포로(예컨대 조창호씨)에게는 급여와 연금 등이 지급되었으나, 사병에게는 급여(보수) 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예컨대 북한측에 포로가 될 당시 이병이었던 양순용씨(1997년 12월 24일 44년 6개월만에 귀환)의 경우 사병에 적용되는 군인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한 것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보수는 202만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보수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기 때문에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탈북·귀순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여 양순용씨에게 주거지원, 정착금, 보로금 명목으로 총 6,207만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지원금도 역시 국가를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되어 일생을 희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언제나 열전(熱戰)의 장이 될 수 있는 한반도 현실에 비추어 장차 발생가능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위기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법규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던 것이다.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가 미귀환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파악과 송환대책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포로의 인사관리체계를 정립하며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

1조 및 제3조 참조). 이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는 북한에서 억류된 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 정착금과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병이 포로가 된 경우는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 제1항). 병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은 하사 4호봉을 부여하며(법 제9조 제2항)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또한 퇴역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정착금을 지급하되(법 제11조 제2항의 반대해석),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2조 제1항).

한편 국방부는 1999년 5월 10일 대통령령 16,291호로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는 한편, 7월 1일에는 동법과 시행령을 실시하기 위한 「귀환 국군포로 지원지침」을 마련하였다. 「귀환 국군포로 지원지침」에 따르면 장교 및 하사관은 포로 당시 계급별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사병은 입대일 기준 3년 경과 후 하사로 임용(초임호봉 4호봉)하여 군인보수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호봉승급은 군인사법에 의한 해당 계급정년까지 승급한다. 또한 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에게는 국방부에 설치된 「국군포로·실종자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등급에 따라 주거시설을 지원하며, 억류기간과 계급에 따라 매월 연금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⁸⁹⁾

89) 현재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군포로 지원지침」에 의거하여 하사 이하 사병(포로 억류 당시 계급 기준)이었던 국군포로가 귀환한 경우 입대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달부터 하사 4호봉 기준의 월급을 지급하고, 하사 이상은 현재 지급되는 월급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순용씨의 경우 동 지침 제정 전에는 202만원에 불과하던 월급이 1억3천여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고, 매월 69만원의 연금

라.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송환 촉구 여론 조성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민간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이들의 송환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국제적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전쟁 희생자와 참전군인들의 권익 및 국제적 유대증진 등을 목적으로 1950년에 창설된 「세계제대군인연맹」(World Veterans Federation: WVF)의 제22차 정기총회(회원국 74개국)가 199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때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 연맹 사무총장 및 집행위원들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전 참전국 및 참전 용사간의 우의와 전우정신을 계승·발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1978년에 창설된 「국제한국전참전향군연맹」(회원국: 참전 16국, 의료지원국 5국, 한국)의 제11차 집행위원회가 1998년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한국전쟁 포로 및 실종자 송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1998년 5월에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다.

셋째, 1998년 10월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ICRC가 북한에 생

과 20평형 아파트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 밖에 장무환씨 등 나머지 귀환포로 5명에게도 1억 4천~1억 6천여만원의 월급과 67만~81만원의 연금 및 20평형 아파트가 제공되게 되었다. "귀환 국군포로 월급 등 정착지원 대폭 강화," 「연합뉴스 속보」, 1999년 7월 2일자 참조.

존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ICRC는 1998년 12월 국군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 내용은 우선 생존여부 및 소재에 대한 정보교환과 사적인 서신교환을 허용하고 상호방문 및 재결합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ICRC는 조만간 북한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실득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스트리드 하이버그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Societies: IFRC) 총재 등 일행 4명이 1998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방북시 북한적십자사의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거론하였다.⁹⁰⁾ 이후 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는 서울을 방문하여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협의하였다.

또한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99년 3월 15일 ICRC, IFRC, 각국의 적십자사, 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관련 비정부간 국제기구(NGO)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⁹¹⁾ 이러한 민

90) 「문화일보」, 1998년 11월 12일, p. 5 참조.

91) 이 서한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해 납북된 한국 국민 3,756명 중 납북어부 407명을 비롯하여 454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국군포로 470명중 231명(그 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9월 3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44명으로 정정)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한국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그 동안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적십자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했으며, 북한내에 국군포로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서한에서는 국제사

간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향후 국군포로를 포함한 광의의 이산가족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⁹²⁾

이 외에도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국제인권단체나 한국동란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향군단체 등을 통해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3.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

가. 북한의 국군포로 존재 부인 및 협의거부 태도

전술한 바와 같이 1953년 7월 정전이 이루어진 후 남한은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조 하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측에 여러 차례 국군포로의 추가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한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북한측의 태도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북한내에는 국군포로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내 억류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⁹³⁾ 이는 정전 직후 국군포로를 모두 송환했다는 그들의 기존주장과 통하는 것이다.

면위원회가 1990년 한국인 납북자 일부가 평양 근교 승호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폭로하였으며, 1999년 1월 한국정부도 납북자와 월북자 22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면서, 이같은 정보들은 납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서한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납북자들이 하루 속히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9년 3월 16일, p. 2.

92) 제성호,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금강산관광의 실현과 관련하여-,”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주최,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세미나, 1998년 12월 22일, p. 21 참조.

93)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40.

둘째는 위와 같은 억지주장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은 ‘국군포로를 송환하라’는 남한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남한측의 국군포로 송환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우리측의 협의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측의 무성의한 태도, 특히 국군포로 존재부정의 입장 때문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무리한 억지주장과 협의 거부 입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1999년 3월 22일 평양방송을 통해서 한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남북자 송환문제를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라고 비난하고, “국군포로니 남북자니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에는 단 한명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북한이 바로 이러한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반공포로 석방 요구 등 역선전 가능성

남한이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북한은 여러 가지 대남 선전공세 내지 역선전을 해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러한 대남선전공세의 예로는 첫째, 출소납파간첩 등 공안사범(이른바 미전향 장기수)의 복송 요구 및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 둘째, 미귀환 국군포로는 자발적으로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 셋째, 1952년 11월 유엔측에서 한국전쟁중 민간인으로 분류하여 석방한 37,000명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는 것, 넷째, 반공포로 27,000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⁹⁴⁾ 특히 북한이

정전이 성립되기 직전인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을 문제시 삼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할 경우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질 것이다.

설령 정전 후 남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미귀환 국군포로들은 전쟁범죄인(war criminal),⁹⁵⁾ 귀순자(deserters),⁹⁶⁾ 피석방자(released people)⁹⁷⁾ 중의 어느 하나였으며, 따라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송환요구를 거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경우 미귀환 국군포로가 전쟁범죄인, 귀순자, 피석방자가 아니라 지금도 포로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는 증거법의 원칙상 송환을 요청하는 남한측에 있다.⁹⁸⁾ 그러나 미귀환 국군포로의 생존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남한이 이를

94) 위의 책, p. 41.

95) 교전자가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례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전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적에게 체포되면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된다. Jean S. Pictet (ed.),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Commentary III*, pp. 417~418.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박헌영은 1950년 7월 13일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제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전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때 북한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인민에 대한 전범’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85조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만호, “한국군포로의 북한억류실태와 송환문제,” p. 61.

96) 귀순자는 영구히 또는 군사작전 기간에 그 자신의 군사적 의무를 일방적·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적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외국의 영역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를 말한다. 귀순자는 포로로 취급되지 않는다. Karl Doehring, “Deserters,” p. 152.

97)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정전 후 국군포로들을 제대시키기 시작해서 1956년에 완료하였다. 여기서 제대는 국군포로를 석방하여 북한의 민간인 신분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석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잔류하는 미귀환 포로는 북한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민간인 신분을 갖는 피석방자가 된다. 북한은 이들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송환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98) 金明基, “國際法上 未歸還 國軍捕虜의 法的 地位,”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 제8회 통일정책 대토론회, 1998년 5월 29일, p. 13.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외에도 국군포로들이 장기간의 억류과정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북한체제 하에서 생활해 오고 있는 점도 국군포로의 송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

포로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쟁 당사국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국군포로문제가 남북간의 합의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해결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기구에 제기하는 방법을 살펴 보기로 하자.

(1)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의 어려움

미송환 국군포로문제를 아직까지도 전쟁법상의 포로자격을 가진 자의 송환문제로 파악하고 정부가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유엔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치기관으로 직접 한국동란시 발생한 전쟁포로 송환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당사자의 재판부탁 합의(compromis)가 있어야 분쟁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⁹⁹⁾ 그러나 북한이 국군포로 송환문제

99)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40조 1항. 이러한 분쟁부탁합의를 특별협정

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⁰⁰⁾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동 기구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구로는 적합할지 모르나(물론 여기에도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음),¹⁰¹⁾ 송환문제 자체를 처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와 같은 기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기구 역시 반세기 전의 일을 이제 와서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상의 어느 국제기구나 단체에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군포로의 인적 사항, 생존지역, 북한의 억류행위 등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데 이것들을 입수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국군포로문제는 전쟁법에 따른 해결보다는 미송환 국군포로의 가족이나 인권문제 관련 비정부단체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환문제부터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한편, 반세기가 다 되도록 전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도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special agreement)이라고도 한다. B. S. Murty, "Settlement of Disputes," Max Sørensen (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 Macmillan, 1968), pp. 701~702; Shabta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vol. 1 (Leyden: A. W. Sijthoff, 1965), pp. 313~318 참조.

100)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41.

101) 제성호, 「北韓人權 改善을 위한 國際協力方案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國際人權法の 實踐制度」, 석암 배재식 박사 고회기념 논문집 (서울: 박영사, 1998), p. 400 참조.

조사와 증거 수집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제3국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

한국동란의 유관국인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나라와 협력하여 북한당국을 설득함으로써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중국은 중국내의 탈북자는 식량난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해 불법월경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로서 난민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를 처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주권사항이므로 한국이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한국동란시 발생한 포로문제는 정전협정의 체결로 완결된 문제이므로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이를 다시 제기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만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협조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¹⁰²⁾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민감한 사안의 하나인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에 성의를 보이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2)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p. 41.

V.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 및 송환문제 해결방안

1. 기본방향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국제법(특히 전쟁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남북화해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제네바 제3협약에 해당하는 포로를 1953년에 전원 송환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귀환 국군포로들이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북한에서 장기간 생활하여 왔으므로 북한주민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국제적십자사나 유엔 등 꾸준히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민간인권단체(Human Rights NGO)들과 연대하여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국군포로문제는 본질상 전후 미해결의 문제이다. 따라서 포로에 관한 국제법규나 전쟁법에 따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국제법에 의한 해결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북한도 남한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하거나 피석방자라는 구실을 들어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군포로문제를 남북화해와 인도주의, 즉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셋째,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남북협상을 제의하여 북한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성공법이 필요하다. 남북협상을 통한 해결은 장·차관급의 남북한 당국간의 협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다양한 협상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만일 남북협상에서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을 이산가족의 한 부류로 취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재북(在北) 국군포로 2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대책 등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군포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가능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관계를 고려하여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¹⁰³⁾

103) 이와 관련, 허만호 교수는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관한 원칙과 방향으로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국군포로문제는 전반적인 남북한관계 개선 정도와 한국의 대북·통일정책과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특히 국군포로문제를 협상의제로 상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둘째,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국군포로문제의 '사건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제기구를 활용할 수 있고, 대북 설득과 국내 및 세계여론에 호소하여 북한에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 결합이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각종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국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군포로 송환사업이 역동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을 단죄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하되, 대북 경제지원,

2. 세부추진방안

가. 사전 기반조성

(1) 국군포로문제의 국제공론화 지속 추진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군포로문제를 국제공론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국제공론화는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군포로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를 폭로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송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구와의 긴밀한 협의¹⁰⁴⁾ 하에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나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등 관련 정부간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나 국제인권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Human Rights: ISHR) 등 국제 NGO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여론을 조성해

자본 및 기술투자 등을 인센티브로 활용,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게 설득력이 있는 국가나 국제기구를 중재자로 활용함으로써 국군포로 송환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해야 한다. 허만호, “한국군포로의 북한여류실태와 송환문제,” p. 67.

104)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와 단체들은 대한적십자사, 재향군인회,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약칭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있다.

야 한다. 매년 8월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기간 중 세계 각국의 NGO들이 모여들어 자국의 인권문제를 널리 알리고 다른 NGO들의 협조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는 국군포로문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인권단체들이 유엔인권소위원회 개최를 전후하여 열리는 인권토론회에 적극 참가토록 하여 국제인권기구는 물론 다른 나라의 NGO들에게 국군포로문제를 소개하고 공동연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시 국군포로문제를 거론토록 하는 한편,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한 청원서 제출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이 때에는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 등이 남북한에 대해 국군포로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결의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결의가 축적되면 특정 인권위반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원조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함으로써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생존 국군포로의 명단확보 및 생사확인 추진

국군포로중 현재 국방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생존확인 인원은 244명에 불과하다. 물론 실제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군포로와 관련된 현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생존 국군포로의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포로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귀환 국군포로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귀환 국군포로들의 명단을 계속해서 추가·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내의 민간기구와 단체들이 국제사면위원회나 국제인권협회와 같은 국제인권기구와 협조하여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의 현황과 실상을 확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외의 민간인권단체들이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귀환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도록 유도하되, 당장 포로들의 송환이 어렵다면 우선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주변국의 협조 및 대북한 설득 전개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한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국군포로문제의 관련 당사자인 미·중의 협조를 얻어 대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이 한국동란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전후 처리를 제대로 완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남북한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과 이해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 확산을 위해 치밀한 국군포로문제 홍보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러한 공통의 책임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미·중이 대북한 설득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록 당장에 있어서는 대북 영향력이 약할지라도 한반도문제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나 캐나다 등에 대해서도 국군포로문제의 실상을 자세하게 알리고 이들 국가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장차 대북한 설득과 태도변화 유도를 위한 기반을 넓혀 나가야 한다.

나. 국군포로 및 가족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1) 국제사회에서 국군포로의 인권개선 촉구 및 실현

(가) 국군포로 등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용

정부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이 문제를 북한인권문제의 하나로 취급하고, 실질적인 인권개선 노력을 펴 나가야 한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인권 개선방안으로는 유엔 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보편적인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국군포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적십자 위원회나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비정부간 국제인권단체에 제기하여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유엔총회에 제기하는 방안

유엔총회는 “현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사항을 토의 하며,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

에 관하여 유엔회원국 또는 안보리 또는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헌장 제10조.)” 이 규정에 따라 헌장상의 어떠한 문제도 총회의 권한, 즉 토의권과 권고권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없다. 따라서 유엔총회는 당연히 국군포로의 인권실태와 그 개선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인권문제에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가 유엔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경우, 총회는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 토의를 하고 필요한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¹⁰⁵⁾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세차례 제기한 적이 있다.

그 첫번째는 1995년 9월 공노명 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일이었다. 그 당시 공 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국제사회가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¹⁰⁶⁾ 이에 대해 북한이 총회장에서 답변권(반론권, right of reply)을 요청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⁰⁷⁾

두번째는 1997년 10월 유종하 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아동

105) 김석현,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의 합법성 및 그 방법,”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1호 (1997), pp. 23~24 참조.

106) 「조선일보」, 1995년 9월 29일, pp. 1, 3; 「동아일보」, 1995년 9월 29일, pp. 1, 8 참조.

107) 남북한은 1995년 9월 28일 오후 유엔총회장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주 유엔 북한대표부의 김창국 참사관은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답변권을 얻어 공노명 외무장관이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미전향장기수문제를 거론하고 “이산가족의 재회를 막는 것은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장벽”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인권의 천국’이라고 강변하였다. 이에 대해 이규형 주 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답변발언을 통해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지난 1년간 서울로 망명한 시베리아 벌목공은 60명이, 그리고 6·25 이후 납북된 인사는 총 43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30일, pp. 1, 3; 「동아일보」, 1995년 9월 30일, p. 1 참조.

들의 기아문제와 인권상황을 공식 거론한 일이었다. 이 때 유 장관은 북한의 테러리즘과 화학무기 비축실태에 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다.¹⁰⁸⁾

세번째는 1999년 9월 30일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홍 장관은 이번에는 북한주민의 기아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⁰⁹⁾ 이러한 입장표명은 북한의 인권문제 전반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주민이 처한 삶의 질이 최저한도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진 상황을 감안하여 식량난 해결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있는 조치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어쨌든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총회에서 일회성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공론화를 도모할 때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실효적인 조치의 실행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에는 국군포로의 인권문제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반대가 집요할 것이며, 유엔총회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유엔

108) 「조선일보」, 1997년 10월 1일, p. 2.

109) 「조선일보」, 1999년 10월 1일, p. 2; 「세계일보」, 1999년 10월 1일, p. 5.

총회에 제기하는 것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언젠가는 의제로 채택되어 유엔총회 차원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고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국군포로문제만을 따로 떼어서 유엔총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한내 정치범 및 미귀환 국군포로의 생활실태 등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또는 「미귀환 국군포로 및·남북억류자 등 광의의 남북이산가족문제」 등 포괄적인 의제를 상정토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유엔인권위원회에 제기하는 방안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인권위원회에 국군포로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 평가 및 심의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하거나 또는 실무위원회(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특정한 업무를 조사·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¹¹⁰⁾ 특히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른바 1235절차와 1503절차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극심하고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관행」(a consistent patter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에 대해 검토·심의·조사

110) 제성호, “北韓人權 改善을 위한 國際協力方案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p. 379.

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1235절차는 1967년 6월 6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 1235(XLII)에 의해 유엔인권위원회와 산하 인권소위원회에 대해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격리정책과 남로데지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종차별정책과 같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에 관한 통보를 심의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관행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¹¹¹⁾ 또 1503절차는 1970년 5월 27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 1503(XLVIII)에 의해 유엔인권소위원회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극심하고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위반의 지속적 관행’에 관한 통보를 검토할 권한을 부여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¹¹²⁾

국군포로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가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국군포로문제는 1235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유엔인권위원회가 미귀환 국군포로문제에 개입할 것을 결정할 경우, 이 같은 1235절차에 따라 국군포로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선임할 경우, 동 보고관이 미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 구성원의 현황, 구체적인 인권실태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인권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건의할

111) Philip Alston,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Appraisal* (Oxford: Clarendon Press, 1991), pp. 155 ~173; H. J. Steiner et 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Oxford: Clarendon Press, 1991), p. 402 참조.

112) Hurst Hannum (ed.),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London: Macmillan Press, 1984), pp. 60~67; Philip Alston,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Appraisal*, pp. 145~155; 金成俊, 「國際人權規約과 個人請願」 (서울: 法務部, 1995), pp. 35~44; 제성호, “北韓人權 改善을 위한 國際協力方案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pp. 379~381 참조.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유엔인권위원회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및 인권실태에 관한 주제별 특별보고관(thematic 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하거나 국군포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당국과 협의하여 동 지역에 파견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인권개선에 관한 대북 인권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당국이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군포로문제를 취급토록 하는 데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전 한국동란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미귀환 국군포로문제를 이제 와서 다루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 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문제가 다루어지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때에도 역시 국군포로의 송환문제가 아니라 미귀환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의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3월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일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홍순영 장관은 탈북자의 인권, 북한주민의 굶주림, 이산가족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비록 그가 국군포로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아직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동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 민간단체의 활용

오늘날 다수의 비정부 민간단체들은 유엔인권위원회의 1235절차와 1503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지 주요 현안문제들의 논의에 정부 대표들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며, 유엔인권위원회(특히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의제 채택과 토론과정, 결의 채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¹³⁾

미귀환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내인권단체와 귀환한 국군포로 당사자 및 그 가족이 공동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유엔인권고등판무관(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서에는 북한당국이 미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진정서는 민간인권단체와 귀환 국군포로와 연명으로 하되, 이러한 진정서 제출이 일과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 청원서 내지 탄원서 형식의 편지 보내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의 인권단체나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을 추진할 경우 이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인권문제도 동시에 거론토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국군포로문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하고 북한당국에 압력을 가

113) 위의 논문, pp. 391~392.

하는 단계에 와 있지는 않다. 현재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의약품 등 여러 가지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인도적 지원단체들도 국군포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단체와 미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유엔인권위원회에 국군포로문제를 심의하도록 청원서를 제출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직·간접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국군포로의 인권실상에 관한 홍보물(책자, 비디오 등)을 제작해서 국군포로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간단체들은 국군포로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여론을 조성하려 할 때 이러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점을 유념하여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제북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 동안 미귀환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들은 북한에서 최하층민으로서 어렵게 살아 왔다.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극도의 영양실조로 고생하다가 또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질병으로 죽어갔다. 특히 1995년과 1996년에 연이어 발생한 수해, 식량난의 심화로 다수의 국군포로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군포로 2세대들은 출신성분의 불량으로 사회진출이 제도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무엇보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와 있음이 가장 비

극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대를 이어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재북 국군포로 2세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국군포로 당사자와 그 가족으로 특정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국군포로 2세의 신변이 노출될 경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만 당할 뿐 실질적인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식량이나 의약품 등 국군포로 2세에 대한 대북지원이 부당하게 북한주민들에 의해 약탈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신체적 안전이 위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중국교포, 탈북자, 북한에서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Societies: IFRC) 등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재북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재북 국군포로 가족들에 대한 지정기탁제 방식의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귀순해 올 경우 일반 탈북자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제3국 체류 탈북 국군포로 및 가족의 보호 및 지원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중

에는 국군포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마땅한 일거리와 안정된 수입원도 없이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 은거하고 있다. 설령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 자리를 얻더라도 업주가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중국공안에 신고하는 것을 무기로 하여 제대로 봉급을 주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할 수 없이 입에 겨우 풀칠을 할 정도로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금품의 갈취 외에도 신체적인 폭행과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1986년 8월 12일 북한과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일명 「변경지역관리의정서」 또는 「불법월경자 상호송환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한 상태로서,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개적·공식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우선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하는 종교단체 등 NGO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신분보장과 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탈북자와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이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 국군포로의 가족재회 및 송환 추진

(1)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

(가) 가능한 남북협상 채널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남북간의 직접대화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만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대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혹은 쌍무적으로 또는 다자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의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에서 남북한이 간접대화를 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다.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해결은 실현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국군포로문제는 이미 반세기 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한국동란이 낳은 전후 미해결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우리측은 1953년 9월 9일부터 1964년 12월 14일까지 11차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측에 미귀환 포로의 송환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해결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19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이래 동 기구를 무실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군사정전위원회보다는 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을 통한 해결이 더욱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은 1998년 6월 15일 이래 1999년 9월 1일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 현재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획정문제를 유엔사측에 협상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사와 협조하여 국군포로 송환문제 협의를 병행적으로 해결하자고 역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북한이 호응해 나오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북한을 설득한다면 태도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정부대표가 직접대화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정치적·이념적인 면이 많이 개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최선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1998년 4월과 1999년 6~7월에 베이징(北京)에서 남북차관급회담이 열린 바 있다. 남북차관급회담은 이산가족문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문제, 남북차관급회담의 정례화문제 등 남북간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차관급회담이 생산적인 회담으로 진행되고, 후에 장관급 또는 총리급회담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 여기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에 진입하게 될 경우 남북정치분과위원회나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는 4차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협의·해결하는 방법이다. 4차회담은 1997년 12월 9일 제1차 본회담이 개최된 이래 1999년 9월

1일 현재 모두 6차례 열렸다.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평화체제분과위원회와 긴장완화분과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한국동란의 산물인 바, 여기에 남북한 외에 미·중도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4자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므로 긴장완화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우리로서는 조금하계 서둘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꾸준히 북한을 설득하면 북한이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는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여기에서 협의·해결하는 방법이다. 미귀환 국군포로들도 실향민들과 마찬가지로 분단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도 역시 인도적 성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군포로문제를 인도적 차원 내지 분단고통의 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존재한다.

특히 이산의 원인 여하를 불문한다면 미귀환 국군포로들도 그들의 가족과 헤어져 있는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섭 내지 포함될 수 있다. 또 국군포로문제의 생사·주소 확인, 재남가족들과의 상봉 및 재결합이 인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나 장성급 회담 또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채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 바람직한 남북대화의 방식과 추진방향

앞에서 살펴 본 여러 협상채널 중에서 비교적 현실성이 있는 방안은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해결이라고 생각된다. 국군포로 송환문제, 또는 송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군포로들의 인간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국간 회담 또는 인도적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남북적십자사간의 회담에서 필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협상이 열린면 여기에서는 북한은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의 합법성문제, 즉 제네바 제3협약 제 118조의 해석문제(자유송환인가 강제송환인가 하는 포로송환 의무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적인 논리를 둘러싼 공방을 피해야 한다. 그 대신 남북화해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

(2) ICRC의 주선 또는 중개 활용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직접 대좌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중립적인 제3자의 주선이나 중개는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간에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나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즉 ICRC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¹⁴⁾ 특히 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을 하거나 귀환의사를 확인하

는 과정에서 ICRC가 남북한의 적십자사와 함께 공동조사 또는 의사 확인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ICRC의 중앙심인사업소(中央審人事業所, Central Tracing Agency: CTA)가 중·대만간의 이산가족들간에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을 주선한 사례¹¹⁵⁾는 남북한간에 있어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이나 재남가족들과의 서신거래 실현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군포로의 귀환의사 확인 과정에서는 ICRC가 1953년 상병포로 송환업무에 참여했던 경험¹¹⁶⁾을 참조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도 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포괄적인 이산가족문제의 하나로 접근, 단계적인 해결 모색

전술한 바와 같이 국군포로문제가 본질적으로 전후 미해결의 문제 이기는 하지만, 국군포로의 발생배경과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후처리 차원에서 전쟁법이나 제네바 제3협약에 의거한 국제인도법 적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남북화해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것이

114) 허만호, “한국군포로의 북한억류실태와 송환문제,” p. 66.

115) 최은범, “다른 분단국의 이산가족事例: 중국-대만의 케이스,” 『국제법학회 논총』, 제39권 2호 (1994), pp. 203~206; 제성호, “이산가족의 현황과 상봉 지원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주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문, 1997년 9월 10일, pp. 11~12 참조.

116) ICRC는 1953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된 상병포로 교환과 관련, 4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상병포로 교환업무에 참여시켰다. 그리하여 ICRC는 남한지역 내 포로수용소에서의 포로교환 준비업무에 관여하였다. 동 대표단은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공산군 포로 중 중공 출신자 외에 북한 출신자 600여명의 상병포로도 교환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쌍방의 공동 적십자회가 포로송환 업무를 맡게 되자, ICRC는 즉시 한국에서 수행해 오던 업무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측은 중립국으로 송환되는 포로들이 중립국송환위원단에 넘겨질 때까지 ICRC가 계속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ICRC는 그들을 호송해 주는 등 계속 협조를 제공하였다. 대한 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70년사』, p. 159.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더욱 맞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산의 원인과 현재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군포로들이나 납북억류자나 출소 납파간첩 등 공안사범들도 역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산의 원인을 묻지 않고 국군포로문제를 광의의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관점에서 풀어 나갈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완전한 해결책(송환 내지 가족과의 재결합 등)을 강구하는 단계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상호주의는 ‘엄격한 상호주의’ 내지 ‘강한 연계주의’(tight linkage)가 아니라 ‘신축적인 상호주의’ 또는 ‘유연한 병행추진 원칙’일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도적 문제를 풀어 나갈에 있어서 대북 우위의 입장에 서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상호주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상호주의를 포기할 경우 우리측만이 인도주의를 실현하되, 그에 대한 응답이 없는 일방통행의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인모의 무조건 북송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남북협상에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먼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에 주력하고, 이어 국군포로와 재남가족과의 서신교환,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의 상봉, 국군포로 송환 또는 가족이주를 통한 재결합을 남북한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양측이 상호주의에 입각, 공정한 입장에서 대화를 개시해야 하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우리측으로는 생사·주소 확인이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 등을 적절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한편, 최대한의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자는 현단계에서 미귀환 국군포로와 이른바 미전향 장기수의 맞교환(연계송환)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교환이 단기간내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문점이나 남북한이 합의하는 기타의 장소에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미귀환 국군포로와 재남가족들이 상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상호주의에 입각, 남한의 가족들이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들을 방문하여 재회하는 것과 함께 북한내 가족들이 남한에 살고 있는 미전향장기수를 방문하여 재회하는 것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국군포로와 이른바 미전향 장기수의 맞교환 및 가족들과의 재결합은 국군포로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비밀협상에 의한 석방거래도 병행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북한과 거래원칙에 입각하여 비밀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¹¹⁷⁾ 즉 남북한간에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국군포로를 송환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비밀협상에 의한 석방거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은 동서독간에 이루어졌던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¹¹⁸⁾를 남북한간에 원용하는 방안이라

117) 비밀협상에 의한 송환의 대상으로는 국군포로 외에도 KAL기 납북자, 6.25 당시 납북자, 납북어부 등 북한 억류자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할 경우 북한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이산가족 또는 탈북·귀순자의 가족으로까지 거래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118) 동서독간의 정치범 석방거래라 함은 서독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동독측과 비밀협상을 통해 몸값을 주고 정치범을 석방, 인수해 온 것을 말한다. 1964년 7월 서독 정치지도자들은 이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고 할 수 있다. 이 비밀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남북회담사무국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직원들로 국군포로 송환담당 비밀협상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를 비공개적으로 송환시켜 올 때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송환에 따른 거래비용 내지 대북지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매 송환시 마다 출소납과간첩 등 공안 사범(이른바 미전향장기수 또는 출소공산주의자)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국군포로를 송환시켜 올 경우 가능한 한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예 상호 비공개 및 정치적 목적에의 활용금지도 비밀협상에서 합의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군포로 송환이라는 인도적인 목적의 달성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이후 송환사업은 단절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남북한관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서독측에서는 전독성(全獨省, 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1969년 전독성의 기구가 개편되고 명칭도 내독성으로 변경되어 통일시까지 이르게 되었음)의 장관과 담당자 일부만이 정치범 석방거래를 위한 협상에 참여하였다. 정치범 거래 초기에는 레링거(Ludwig A. Rehlinger)라는 전독성의 과장급 관리가 서독측 최일선 실무담당자로서 1963년 전후의 모든 송환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정치범 거래에 관한 협상에 전독성의 협상담당자 대신에 서독 개신 교연합회 간부(변호사 포함)들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동독측에서는 검찰청과 내무성 및 비밀경찰 슈타지(Stasi)간의 긴밀한 연계 하에 검찰총장이었던 슈트라이트(Josef Streit)가 정치범 송환협상의 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무협상에 있어서는 동독측에서도 고위관료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웠다. 동·서베를린에서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인정받은 포겔(Wolfgang Vogel)이 동독측의 대리인으로 활약했는데, 그는 슈타지의 배후조종을 받았다. 포겔의 협상자(정부대리인)로서의 역할은 1989년 통일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udwig A. Rehlinger, *Frie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politisch Verfolgten 1961~1989* (Berlin: Ullstein, 1991), pp. 9~67 참조.

송환된 국군포로의 비정치적 이용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국군포로가 돌아올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체류장소를 제한하고, 재회 또는 재결합하는 가족들의 범위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소납과간첩 등 공안사범의 대북 송환과정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라. 국군포로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 국군유해 발굴 및 송환

(1) 국군 전사자의 유해발굴 및 송환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나아가 송환대책을 마련함에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전사한 국군포로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동란시 국군 전사자 및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남북한관계 현실에 비추어 당장에 이같은 사업이 성사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그 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동란 중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측과 공동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¹¹⁹⁾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119) 미국은 1994년 10월 미·북 기본합의문이 타결되기 6년 전인 1988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 미군유해 송환협상을 벌여 왔으며, 지금까지도 미군 유해 송환협상을 간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모두 208구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였고, 1996년부터 1999년

추진하고 있는 미군유해 송환협상에 관한 자료를 계속 축적하는 한편, 미·북협상 경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 낼 필요가 있다.

(2) 남한지역내 유해발굴작업 추진

한국동란시 전사자의 유해발굴사업은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전개해야 할 사업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전 후 대대적으로 유해를 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유족에게 인계해 왔으나, 일부 전적지에서 유해가 간혹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도 미발굴된 유해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점에서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국가가 전사한 국군들에 대해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정신하에 유해발굴 및 유족에 대한 인계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아와 관련, 정부는 한국동란 발발 50주년을 맞아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해발굴 및 합동안장사 행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국방부)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에 유해발굴단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전쟁 당시의 연합전투지역에서는 한·미 공동발굴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¹²⁰⁾

10월 1일 현재까지 29구('96년: 1구, '97년: 6구, '98년: 22구)를 송환하였다. 이와 관련, 유엔사와 북한군간에 1993년 8월 판문점에서 「유해문제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on Remains-related Matters)가 채택되었는 바, 이 합의서가 채택되기 전까지 송환된 유해는 40여구 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60개 이상의 유해 송환은 합의서 채택 후에 실시된 것이다. 한편 그간 북한은 미군유해를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 미국에 직접 인도하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미국은 1999년 10월 8일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미군유해 직접 송환 북한 요구 수용,” 「연합뉴스 속보」, 1999년 10월 9일자 참조.

앞으로 정부는 먼저 관련 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착수함으로써 한 국동란이 낳은 아픈 유산을 청산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120)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성과 대책」, p. 46.

VI. 결 론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계기로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에 따라 마땅히 송환되었어야 할 국군포로들이 아직도 북한에 계속 억류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한반도에서 아직도 전후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주권국가로서, 한국 동란의 직접 당사자로서, 부모형제를 전장터에 보낸 가족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귀환을 포함한 인간적 고통의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999년 9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한국동란 기간중 북한군과 중공군에 끌려간 뒤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미귀환 국군포로의 수를 244명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송환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족상잔이 잉태한 비극적 상흔인 국군포로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군포로문제는 정전 당시 북한측이 국군포로의 명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이들을 이른바 '해방전사'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억류, 송환하지 않은 데서 발단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전이 성립된지 반세기가 되도록 아직까지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는 데는 그간 우리 정부가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와 해결의지 부족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이 지금도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단시일내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선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적십자사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 NGO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한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국군포로문제의 관련 당사자인 미·중의 협조를 얻어 대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은 정지작업을 마친 후에 국군포로 송환협상을 북한측에 제의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국군포로문제는 한국동란이 낳은 전후 미 해결의 문제이므로 정전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틀내에서 또는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군급 대화채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측이 1953년 9월 9일부터 1964년 12월 14일까지 수차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측에 미귀환 포로의 송환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군포로들도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인도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군급대화 채널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남북한 당국의 양해하에 남북적십자사 대표가 만나 해결을 논의(1953년 포로송환업무 참여경험 참조)할 수도 있고,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국군포로 송환이나 가족들과의 상봉을 추진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최대한 신축적인 자세로 임하되, 협상과정에서는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 확대를 적절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국군포로가 전사자로 처리되어 국립 묘지에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남북협상에서는 먼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에 주력하고, 서신교환, 상봉 및 재결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선과 협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국군포로(가능할 경우 남북억류자도 함께)와 소위 미전향장기수를 맞교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송환이 어렵다면 남북한이 합의하는 장소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미귀환 국군포로와 재남가족들이 상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내 국군포로와 그 2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내부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내부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현행의 법규정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군포로들이 탈출·귀환해 올 것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계기반 마련 및 자립지원을 위한 보다 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서울: 국방부, 199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 _____. 「韓國戰爭 要約」.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 _____. 「韓國戰爭 休戰史」.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中國),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원제 「中國人民支援軍抗美援朝戰史」). 서울: 세경사, 1991.
- 김복동.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즈음해」. 정책자료집 98-1 (1998.12).
- 金成俊. 「國際人權規約과 個人請願」. 서울: 法務部, 1995.
- 金幸福. 「韓國戰爭의 捕虜」.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 남북회담사무국. 「관문점 수첩(증보판)」.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5.
-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70년사」. 서울: 대한적십자사, 1977.
- Mark W. Clark, 김형섭 역.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 (원제 *From the Danube to the Yalu*). 서울: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李漢基. 「國際法講義」. 新訂版 서울: 博英社, 1997.
-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編(陸軍本部 軍史研究室 譯). 「韓國戰爭」. 제10권. 서울: 명성출판사, 1986.

제성호. 「韓半島 非武裝地帶論」. 서울: 서울프레스, 1997.

Hermes, Walter G.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6. 陸軍本部 譯.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유엔군 전사 제2집. 서울: 육군본부, 1968.

White, William L. *The Captives of Korea*,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韓國戰爭捕虜」.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藤田久一. 「國際人道法」. 東京: 世界思想史, 1980.

Alston, Philip.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Appraisal*. Oxford: Clarendon Press, 1991.

Friedman, Leon. *The Law of War: A Documentary History - volume I*. New York: Random House, 1972.

Glahn, Gerhard von. *Law Among Nations: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1.

Hannum, Hurst (ed.).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London: Macmillan Press, 1984.

Lauterpacht, Hersch.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2, 7th ed. London: Longmans, 1952.

Murty, B. S. "Settlement of Disputes," Max Sørensen (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 Macmillan, 1968.

Pictet, Jean S. (ed.).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Commentary III*. Geneva: ICRC, 1960.

Rehlinger, Ludwig. A. *Fried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 politisch Verfolgten 1961~1989* Berlin: Ullstein, 1991.
- Rosenne, Shabtai.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vol. 1. Leyden: A. W. Sijthoff, 1965.
- Steiner, H. J. et 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Oxford: Clarendon Press, 1991.
- Stone, Julius.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2nd Impression New York: Reinhart and Company Inc., Publishers, 1959.
- Whiteman, Marjorie M.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10,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8367.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

2. 논문

- 金明基. “國際法上 未歸還 國軍捕虜의 法的 地位.” 중앙대학교 민족 통일연구소.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 제8회 통일정책 대토론회, 1998년 5월 29일.
- _____. “國際法上 未歸還 國軍捕虜 送還의 諸問題(上).” 「國際問題」. 1998년 7월호.
- _____. “國際法上 未歸還 國軍捕虜 送還의 諸問題(下).” 「國際問題」. 1998년 8월호.
- 김명기. “국제인도법상 비전향 출소자의 포로지위 검토.” 「人道法論叢」. 제15호 (1995).
- 김석현.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의 합법성 및 그 방법.”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1호 (1997).
- 김정민. “국군포로와 이산가족들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 「北韓」. 1998년 6월호 (통권 제318호), pp. 48~49 참조.

- 김행복. “미송환 국군포로문제: 누가 국가위기에 선두에 설 것인가.” 「선택」, 1998년 6월호.
- 金幸福. “韓國戰爭時 捕虜發生과 處理過程.” 國防軍事研究所, 「韓國戰爭과 戰爭捕虜 處理問題」, '97軍事史 學術會議 발표논문집, 1997.6.10.
- 민경길.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 대한적십자사·대한국제법학회 공동주최 제15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발표논문, 1996.11.22.
- _____. “제네바협약 50년과 한국: 회고와 전망.” 대한적십자사·대한국제법학회, 「국제인도법의 도전과 과제」, 제1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발표자료집, 1999.11.19.
- 閔庚吉. “韓國戰爭 捕虜에 대한 送還問題.” 國防軍事研究所, 「韓國戰爭과 戰爭捕虜 處理問題」, '97軍事史 學術會議 발표논문집, 1997.6.10.
- 朴鎭龜. “休戰協定の 締結過程.” 「軍史」, 제6호 (1983).
- 서주석.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연구.” 「北韓調查研究」, 제2권 1호 (1998).
- _____. “美國의 對北韓 捕虜送還政策.” 國防軍事研究所, 「韓國戰爭과 戰爭捕虜 處理問題」, '97軍事史 學術會議 발표논문집, 1997.6.10.
- 이기봉. “5만 국군노병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北韓」, 1998년 6월호 (통권 제318호) (1998).
- 全元策. “對北感覺에 問題있다.” 「民族正論」, 1994년 12월호.
- 정석근.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한국포로는 송환되어야 한다.” 「北韓」, 1994년 12월호 (통권 276호).
- 제성호. “북한의 國軍捕虜에 대한 待遇의 人道法的 考察: 조창호 소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人道法論叢」, 제15호 (1995).
- _____. “이산가족의 현황과 상봉지원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주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문, 1997년 9월 10일.

- _____. “한국휴전협정의 이행실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서울: 집문당, 1998.
- _____.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 금강산관광의 실현과 관련하여-,” 남북이산가족교류협회의 주최,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세미나자료집」, 1998년 12월 22일.
- _____. “北韓人權 改善을 위한 國際協力方案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國際人權法の 實踐制度」. 석암 배재식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서울: 박영사, 1998.
- 최은범. “다른 분단국의 이산가족事例: 중국-대만의 케이스.”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2호 (1994).
- Baxter, Richard. “Asylum to Prisoners of War.”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0 (1953).
- Clause, J. D. “The Status of Deserters Under the 1949 Geneva Prisoner of War Convention.” *Military Law Review*. vol. 11 (1961).
- Dinstein, Yoram. “Prisoners of War.”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4 (Use of Force·War and Neutrality·Peace Treaties) Amsterdam·New York·Oxford: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2.
- Doehring, Karl. “Deserters,”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3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2.
- Levie, H. S. “The Employment of Prisoner of War.” *Military Law Review*. vol. 23 (1964).

3. 기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國際人權報」. 1995년 1월 15일자.

김용삼. “국군포로 양순용씨 귀환기.” 「월간조선」. 1998년 6월호.

동화연구소. “돌아 온 조창호 소위는 말한다.” 「同和」. 1994년 12월호.

「조선일보」. 1994년 10월 25일~29일, 1995년 9월 29일~30일, 1997년 6월 25일, 1999년 10월 1일.

「동아일보」. 1994년 10월 25일, 1995년 9월 29일~30일.

「한국일보」. 1997년 6월 25일.

「문화일보」. 1997년 6월 25일.

「세계일보」. 1999년 10월 1일.

New York Times. July 14. 1950

(U) Msg. CINCUNC CX 61281 to DA 19 Feb. 1953. DA IN 239084. *Dept. of State Bulletin*. 6 Apr. 195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가을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룡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준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와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